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공공계약
샌드박스제도
운영 방안 연구

2021. 10.

김창원 · 김대식
백용선 · 박영숙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공공계약 샌드박스제도 운영 방안 연구

2021. 10.

김창원·김대식·백용선·박영숙

본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외부 연구진이 작성하였으며, 본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年 135조원(GDP대비 7.1%, 2019년 기준) 규모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공공조달은 시장에서 각종 안정인증(KC인증 등), 법정 의무 형식승인·형식인증 등 법적·기술적으로 인증·유통이 허용된 상용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신산업, 기술 융·복합 제품이 빠르게 출현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조달원칙은 시장의 규제적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에 물품·용역·시설 공사 등에서 디지털혁신서비스, 혁신소프트웨어, 혁신적 공법 및 시설 공사 생산체계 등으로 확대되려면 혁신 아이디어 수용이 가능하도록 공공계약제도 개선 방안이 전반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혁신적 계약·입찰제도 도입에 앞서 현행 계약제도 적용의 예외로서 시범사업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의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 수행 체계 마련 검토가 필요
- 현행 제도하에서 체계적 공공계약 규제개선 체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공공조달 특례의 내용 및 절차 미비)** 현재 혁신조달, 감염병 등 긴급조달과 관련된 특례사항은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하위규정 개선을 통해 그 내용이 잘 정비되어 있으나, 공공기관 계약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시범사업 운용과 전체적 공공조달 특례절차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기존 규제 샌드박스 입법 사례의 공공조달 특례 벤치마킹 필요) 기존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법들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 및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익적 가치의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신기술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점을 조화롭게 해결하고자 규제 3종 세트(① 규제의 신속 확인 ② 실증특례 ③ 임시허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응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공공계약 분야 또한 규제개선 수요 상황에 따라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에 대응되는 법적 근거 마련이 가능함

[표 1] 공공계약건의 유형별 규제대응 입법 방향

구분	대응 방향	절차	입법적 대응
해석으로 법령 위반이 아님을 규명 가능한 경우	적극행정·실행 필요 영역	집행	신속확인
법령상 허용되는지 모호한 경우	심의절차·기준 마련 필요 영역	기준마련·위원회 등 심의→집행	임시허가
법령 위반이 명백하지만 허용 필요성이 큰 경우	단계적 접근 필요 영역	1차 임시허용→ 시범사업·평가→ 법령 개선→ 허용(부분·전체)	실증특례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관 제도 및 사례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 및 단계적 접근 방안을 제시함

[표 2]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과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안 차용 「국가계약법」 개정(제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개선의 체계적 절차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이 복잡하고 입법 절차 시 난항 예상 지방계약 분야 적용 난이
공공계약제도 유연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제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방식의 유연화·다양화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만으로 단순화하여 간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차법 위주의 현재 국가계약법을 체계와의 정합성에 문제 야기 지방계약 분야 적용 난이
중앙부처의 국가계약의 기준·절차 유연화에 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제3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부처의 계약방식 다양화요구에 부응 법을 개정안에 비해 신속한 추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부처의 과도한 요구는 국가계약법령 체계에 부담 야기 별도 심의절차 마련 필요 지방계약 분야 적용 난이
공공계약 기준·절차 유연화를 위한 조달청 역할 확대 관련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제4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의 공공계약 기준·절차 유연화 실무적 창구 역할 확대를 통해, 규제혁신의 신속한 추진 가능 지방계약 분야 적용 상대적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과 재정부와의 역할분담 명확화 필요(별도 심의절차 마련)

- 제1안(규제 샌드박스제도의 「국가계약법」 적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허가 등 타 법령에 따른 규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계약절차의 속성으로 인해, 규제 관련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의 대상과 범위가 다른 관계기관의 규제개선 테마나 활동과 중첩될 소지가 높다는 견해가 있음
- 더불어 신기술이나 혁신이 반영된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경우, 이하의 「조달사업법」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와 상당 부분 중첩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제2안(공공계약제도 유연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의 경우, 유연한 낙찰자결정 방식과 계약방식의 구체적 허용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서 법률의 형식은 경직적이며,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제3호의 내용이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쟁입찰의 낙찰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다소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계상 부적절함

- 실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공공계약 규제개선 사례에서 보듯, 공공계약 규제개선은 혁신적 입찰참가자격/입찰·낙찰·계약관리 제도를 대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이하에서 다양한 낙찰자결정 및 계약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바, 제3안(중앙부처의 국가계약의 기준·절차 유연화에 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동법 시행령에 다양한 낙찰자결정·계약방식의 한시적 허용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I.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가. 제안요청 내용	2
나. 연구방법	3
II.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공공계약 관련 규제개선 개관	4
1. 행정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4
가. 행정규제의 의의	4
나. 규제 샌드박스 및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의 의의	5
다. 공공계약 규제의 범위	7
2. 공공계약 관련 규제개선 사례	9
가. 공공기관 공공계약 특례 절차(기획재정부)	9
나. 공공기관 계약업무 관련 규제개선 사례(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 ...	16
다. 코로나19 등 긴급물자조달 관련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20
라. 혁신조달제도 관련 규제개선(조달청, 기재부)	22
3. 공공계약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	24
III. 국내외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시사점 검토	26
1. 해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검토	26
가. 영국	26
나. 미국	31
다. 일본	33
라. 싱가포르	38

2. 국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검토	40
가. 개요 및 주요성과	40
나.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44
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48
라. 지역혁신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52
마. 금융혁신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54
바.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56
3. 국내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의 시사점	59
IV.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실행방안 및 법제 개선 방안	64
1. 해외 기술혁신 계약제도 개관	64
가. 미국	64
나. EU	65
다. 영국	65
라. 캐나다	67
2. 국내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수요 설문 결과	67
3.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원칙 검토	70
4.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 법제화 방안	74
가.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내용	74
나.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안)	78
참고문헌	93
부록	
[부록 1] 국가계약 관련 규제개선 및 시범사업 대상사항 수요조사 양식 ..	96
[부록 2] 정보통신분야 규제 샌드박스 입법(「정보통신융합법」) 사례	98

표목차

〈표 II-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0
〈표 II-2〉 2016~2020년 공공기관 계약 특례 승인 내역(기획재정부)	13
〈표 II-3〉 조달시장 참여 확대 및 부담 완화 관련 공공계약 규제개선 사례(산통부)	17
〈표 II-4〉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공계약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21
〈표 II-5〉 혁신조달제도 관련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기재부)	22
〈표 III-1〉 영국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 업체 현황	27
〈표 III-2〉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다섯 가지 원칙	34
〈표 III-3〉 규제 샌드박스 인증 사례(2021년 4월 기준)	35
〈표 III-4〉 싱가포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선정 기준	38
〈표 III-5〉 싱가포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주요 특징	39
〈표 III-6〉 싱가포르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 기업과 분야	39
〈표 III-7〉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체계 및 현황	41
〈표 III-8〉 각국 규제 샌드박스의 현황 개관	59
〈표 III-9〉 임시허가 제1호 사업 추진 연혁	62
〈표 III-10〉 규제 샌드박스 실무 지원체계 사례	63
〈표 IV-1〉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수요내용	68
〈표 IV-2〉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개요	72
〈표 IV-3〉 공공계약 규제개선 관련 법적 근거	74
〈표 IV-4〉 현행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비교	76
〈표 IV-5〉 공공계약건의 유형별 규제대응 입법 방향	77
〈표 IV-6〉 관련 「국가계약법」 개정 예시	78
〈표 IV-7〉 관련 「국가계약법」 개정 예시	79
〈표 IV-8〉 관련 「국가계약법」 개정 예시	81

〈표 IV-9〉 계약방식의 유연화와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예시 (제2안)	84
〈표 IV-10〉 공공계약의 기준과 절차의 유연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예시(제3안)	88
〈표 IV-11〉 공공계약의 기준과 절차의 유연화를 위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 예시(제4안)	89
〈표 IV-12〉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장·단점 비교	90
〈표 IV-13〉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공계약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92

[그림 Ⅱ-1] 규제정보포털 메인화면	7
[그림 Ⅱ-2]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관련 등록규제 현황	8
[그림 Ⅱ-3] 조달청 조달사업 유관 법률 관련 등록규제 현황	8
[그림 Ⅱ-4] 네거티브 규제 개념도	16
[그림 Ⅲ-1]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35
[그림 Ⅲ-2] 한국 규제 샌드박스의 절차	41
[그림 Ⅲ-3]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흐름도	42
[그림 Ⅲ-4]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관련 갈등 사례(카풀서비스)	61
[그림 Ⅲ-5] 한국 규제 샌드박스의 절차	63

I.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年 135조원(GDP대비 7.1%, 2019년 기준) 규모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입찰참여 기업도 58만개 업체 수준('19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 조달청 입찰참가업체 추이: ('15년) 32.0만개 → ('17년) 37.3만개 → ('19년) 57.5만개
- 다만 공공조달은 시장에서 각종 안정인증(KC인증 등), 법정 의무 형식 승인·형식인증 등 법적·기술적으로 인증·유통이 허용된 상용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신산업, 기술 용·복합 제품이 빠르게 출현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조달원칙은 시장의 규제적 요소로 작용
 - 최근 계약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간의 물품·중심의 공공조달 수요가 디지털서비스 등 혁신기술, 용·복합 신산업으로 확대
 - 기존의 정형화된 상품·서비스를 전제로 규정된 입·낙찰제도가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 이에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 통과 제품이 조달청 혁신시제품 사업참여 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혁신제품의 초기 수요를 견인한 사례처럼 지금까지의 공공조달 혁신전략이 혁신제품 위주로 논

의되어 왔으나, 용역·시설공사 등에서 디지털혁신서비스, 혁신소프트웨어, 혁신적 공법 및 시설공사 생산체계 등으로 확대되려면 혁신 아이디어 수용이 가능하도록 공공계약제도 개선 방안이 전반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혁신적 계약·입찰제도 도입에 앞서 현행 계약제도 적용의 예외로서 시범사업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의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 수행 체계 마련이 동 연구의 목적임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제안요청 내용

- 발주기관 제안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른 연구수행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1) 공공계약 샌드박스제도 도입 필요성

- 경직적·확일적 계약제도 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 등의 조달시장 진출 진입 제한 가능성 등 분석
 - 현행 법령상 특례제도를 통한 유연성 부여에 한계

(2) 다른 법령상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도출

-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공무원 인사 특례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내용 정리
 - 입찰·계약절차 등 현행 공공계약제도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을 위한 특례 운영에 대한 시사점 도출

(3) 공공계약 샌드박스제도를 계약법령에 반영

- 다른 법령의 입법사례 및 기존의 계약제도 시범사업 사례 등을 참조하여 「공공 계약 샌드박스제도」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 특례운용의 범위(예: 낙찰자 결정방식, 계약보증금 납입 등), 기간 및 특례 설정을 위한 사전 심의·협의절차 등 마련

나. 연구방법

- 관련 문헌 연구 및 법률 전문가 자문 수행
- 국가계약 적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대상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수요설문 조사

II.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공공계약 관련

II. 규제개선 개관

1. 행정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가. 행정규제의 의의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호는 행정규제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더불어 일반적으로 법학에서는 규제를 기본권의 제한, 「헌법」에 보장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하는 주체를 ‘정부’라고 한다면, 그동안 ‘규제’는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태생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¹⁾하며, 정부 정책의 근대적 국정 관리 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음
-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규제 기관과 규제 수단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 왔던 정부 규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불필요한 국정 수단으로 혹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장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임²⁾

1) 이용환,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중간 평가」, 『규제연구 연구논단』, 2000, 45면.

- 이러한 이유로 규제 수를 줄이고, 규제의 질적 개선을 꾀하는 규제 개혁(regulatory reform)이 전 세계적으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음
- 새로운 과학기술의 혁신이 기존의 규제와 충돌하고 사회적 갈등관계를 야기하는 문제는 인류의 과학기술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를 이루어 왔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혁신은 사회, 산업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문화와 정치의 풍경을 바꾸어 왔음³⁾
 -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 법체계 내지 규제체계는 새로운 과학기술에 수반되는 잠재적 위험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그러나 초고속의 과학기술혁신이 시장을 주도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전통적인 규제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경쟁국가와 비교할 때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뒤처지게 되고, 국가 간 장벽이 없는 세계화시대에 결국 우리가 종속적인 지위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⁴⁾

나. 규제 샌드박스 및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의 의미

- 규제 샌드박스⁵⁾ 제도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조건하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시장참가자들이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됨⁶⁾

2) 김신·이혁우, 『규제혁신을 위한 기존 규제의 정비 방안』, KIPA, 2016, 12면.

3) 이원우, 「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법의 현황과 과제」, 『경제규제와 법』, 제 12권 제2호(통권 제24호), 서울대학교, 2019. 11., 138~139면.

4) 이원우, 앞의 논문, 139면.

5) 샌드박스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용어

□ 특히 과학기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 무수한 파괴적 혁신 기술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은 그 이전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산업 간·기술 간 융합이 보편화되는 등 ‘혁신’의 가치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⁷⁾

○ 다만 기존 규제 체계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을 온전히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시하는 법률의 보수적인 특성상 기존 규제 체계가 현 시대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혁신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면서도 기존 규제 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완화 기제로서, ‘규제 샌드박스’가 제기됨⁸⁾

□ 체계적인 규제 샌드박스 논의는 2014년, 영국의 핀테크 산업육성을 위한 금융감독청(FCA) 관련 프로그램에서 유래

○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015. 5.~2018. 7. 각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89개 프로젝트를 선정

□ 이후 뒤에서 살펴보는 바대로, 일본, 미국 등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한편 공공시장에서도 제한된 조건하에서 새로운 물품 및 서비스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으며, 공공시장참가자들이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신산업·신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공공

6) 권현영,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KISO저널』, 제35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9, 30면.

7) 이재훈·정희영,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와 정책적 제언」, 『인권과 정의』, 제489호, 대한변호사협회, 2020, 489면.

8) 이재훈·정희영, 앞의 논문, 489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임

다. 공공계약 규제의 범위

-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는 부처별 규제 현황을 근거 법률별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I-1] 규제정보포털 메인화면



자료: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 동 규제정보포털 등록규제를 기준으로 한 공공계약 규제범위는 계약방법,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단가계약, 부정당업자제제 등임
- 한편 조달사업과 관련된 물품목록등록, 녹색기술 관련 인증, 전자조달 지원센터, 조달물자 품질관리, 우수조달제품제도, 비축사업 및 시설관리 위탁업무 등으로 구분됨

[그림 11-2]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관련 등록규제 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제7조(계약의 방법)
	제7조(계약의 방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9조(입찰보증금) 제37조(입찰보증금)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제12조(계약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25조(공동계약) 제72조(공동계약)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조세포탈 등)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제한)

자료: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그림 11-3] 조달청 조달사업 유관 법률 관련 등록규제 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8조(입찰 공고 등)
	제9조(입찰보증금) 제37조(입찰보증금)
	제22조(단가계약) 제12조(국가종합전자조달... 12조)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물품목장부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목록화의 원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매금 지급) 제55조
	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32조(민관 공동 비축사업) 제42조(우선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
	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제3조(조달물자 전문기... 3조의2)

자료: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 더불어 중기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규제로 등록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또한 조달분야 주요 규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상기 등록규제 이외에도, 입찰참가자격, 조달수수료 등도 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또한 혁신 신산업 조달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행정규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2. 공공계약 관련 규제개선 사례

- 최근 모든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인 적극행정을 지향하면서, 일상적인 규제개선에 임하고 있음
- 특히 공공시장을 통괄하는 규제시스템 부문인 공공계약 부문에서 구체적인 규제개선 사례가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① 공공기관 계약 특례제도(기획재정부) ② 조달시장 참여 범위 확대 및 시장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 계약관련 규제 개선(공기업 등) ③ 코로나19 등 긴급물자조달 관련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④ 혁신제품 관련 공공계약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기획재정부) 등을 살펴보고자 함

가. 공공기관 공공계약 특례 절차(기획재정부)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은 당사자로 행하는 입찰·계약업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이 원칙적

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령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승인절차를 거쳐 공공계약 업무의 특례가 이루어짐

〈표 11-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p>「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p> <p>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3.5.></p> <p>③ 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p> <p>.....</p> <p>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다만 동 사무규칙 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언급하듯, 다른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면 동 기관들은 당해 입찰·계약업무에 다른 법령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음
- 더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은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며, 특별법의 일반법(「국가계약법」) 배제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별도의 법률 근거를 가지고 「국가계약법」의 특례적 계약 업무 운용 사례를 준정부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서 살펴볼 수 있음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2조의2(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① 협력단은 공공·민간부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민간부문에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공모한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개별 사업 및 그 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약의 상대방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
2. 협약 대상 사업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약 대상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협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 및 협약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국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법령·제도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계약 등에 대한 특례) ① 협력단은 국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에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국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의 대외 협력사업과 관련한 법령·제도·관행 등을 고려해 협력단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계약 부적격자로 공표된 자 또는 그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은 자가 아닐 것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다. 국내외 법령에 따라 뇌물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아닐 것

③ 협력단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예정 가격의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국외공사 계약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검사기간 및 방법 등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7. 그 밖에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의 법령 또는 국제상 관례 등을 고려해 계약조건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에 규정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4. 16.]

□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대한 부여한 특례 내용은 <표 II-2>와 같음

〈표 II-2〉 2016~2020년 공공기관 계약 특례 승인 내역(기획재정부)

순번	특례사항	구분1 (신규/ 변경)	특기사항	세부내용	승인 시기	요청기관
1	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계약사무 특례	신규	구조조정 목적으로 은행 보유 자산을 타금융기관과 공동 매각	수의계약 대상 추가	'16.2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2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 특례	신규	기타	하자담보책임 기간	'16.9	한국토지주택공사
3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6.9	한국수자원공사
4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특례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6.11	한국토지주택공사
5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 특례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6.11	한국철도시설공단
6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 특례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6.11	한국토지주택공사
7	한국국제협력단 계약특례	신규	해외사업	입찰 및 계약방법 등	'17.3	한국국제협력단
8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 특례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7.4	한국도로공사
9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7.7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10	서울대학교병원 대가지급 특례재승인	기간 연장	대가지급	대가지급기한	'17.7	서울대학교병원
11	편의시설 임대사업자 선정 특례	신규	세입의원인	휴게소 입점업체 선정방법	'17.8	한국수자원공사
12	한국전력기술 수주사업 특례	신규	해외사업	수주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방법	'17.8	한국전력기술(주)

〈표 II-2〉의 계속

순번	특례사항	구분1 (신규/ 변경)	특기사항	세부내용	승인 시기	요청기관
13	서울대학교병원 의료물품 구매 민간 위탁 특례 재승인	신규	구매대행 위탁	계약업무의 민간위탁 허용	'17.12	서울대학교병원
14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약특례	신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정책	수의계약 대상 추가	'17.12	한국철도공사 등 다수 기관
15	공공기관 구매식당 위탁영역 계약특례변경	내용 변경	총리 지시사항	고시금액(2.1 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 제한	'17.12	공공기관 전체
16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특례연장	기간 연장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8.3	한국토지주택공사
17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8.4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18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 특례 (시공책임형CM, 순수내역입찰)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8.5	한국수자원공사
19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 특례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8.6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20	한국전력기술 수주사업 특례 변경	내용변 경	해외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9.3	한국전력기술(주)
21	의료장비 구매대행 서비스 도입 특례	신규	구매대행 민간위탁	계약업무의 민간위탁 허용	'19.3	충남대학교병원
22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 특례연장	기간 연장	기타	하자담보 책임기간	'19.3	한국토지주택공사
23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특례연장	기간 연장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9.4	한국수자원공사

〈표 II-2〉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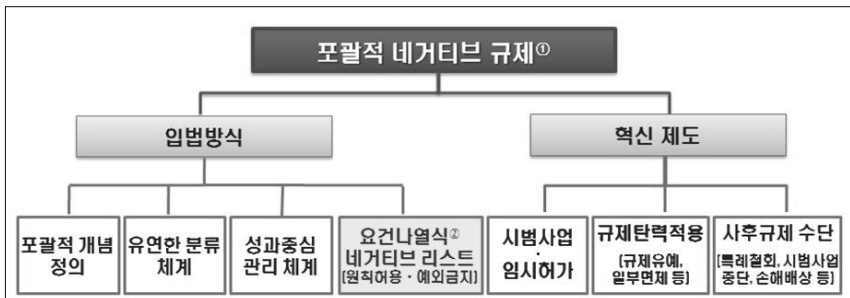
순번	특례사항	구분1 (신규/ 변경)	특기사항	세부내용	승인 시기	요청기관
24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특례연장	기간 연장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9.4	한국토지주택공사
25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특례연장	기간 연장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9.5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26	서울대학교병원 대가지급 특례재승인	기간 연장	대가지급	대가지급기한 변경	'19.7	서울대학교병원
27	공사용 지급자재 물품구매 계약기준절차 특례	신규	기타	하차담보책임 기간 (공사와관급 자재동일)	'19.10	한국토지주택공사
28	의료물품 계약사무 민간위탁 특례	신규	구매대행 민간위탁	계약업무의 민간위탁 허용	'20.2	강원대학교병원
2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특례연장	기간 연장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20.3	한국토지주택공사
30	국립대병원 대가지급 특례	신규	대가지급	대가지급기한 변경	'20.6	11개 국립대병원
31	건설업역폐지 시범사업	신규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20.6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32	강원랜드 계약특례	신규	기타	폐광지역법 내용을 반영한 계약제도 운영	'20.6	강원랜드
33	건설업역폐지 시범사업	내용 변경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20.10	한국도로공사
34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특례연장	기간 연장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20.10	한국도로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2021).

나. 공공기관 계약업무 관련 규제개선 사례(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

-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2017년 9월)한 이후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여 왔으며, 2020년 5월에는 그 대상을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기관 규정에까지 확대하여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⁹⁾
- 네거티브규제의 일반적 의미는 특정한 활동 및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행위 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규제를 말하는데, 정부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입장을 협의의 네거티브규제로 정의하면서 포괄주의·사후규제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포괄적 네거티브규제’라는 개념을 고안하였음¹⁰⁾

[그림 11-4] 네거티브 규제 개념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안)」, 2017. 10., 2면.

9)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보도자료, 2020. 5. 6.

10) 성희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네거티브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조 방안 연구」, 『법과정책』, 제24호, 2018, 134-135면.

- 이에 따라 산통부 주관하에 주요 산하 공기업은 <표 II-3>과 같은 조달시장 참여 범위 확대 및 시장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공공계약 규제개선을 실행함

<표 II-3> 조달시장 참여 확대 및 부담 완화 관련 공공계약 규제개선 사례(산통부)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
1	긴급공사 필요시 수행사업자 선정 범위 확대 (한국서부발전)	<p>기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입찰을 실시할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의 경우 수행사업자를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에 한정 → 더 우수한 공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실적이 부족한 기타 사업자는 공사참여 기회 차단</p> <p>개선 긴급공사 수행사업자를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 → '공사실적이 있는 현지 사업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사업자 선정 범위 확대</p>	공사관리 규정	'20.4.1.
2	긴급공사 필요시 수행사업자 선정 범위 확대 (한국동서발전)	<p>기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입찰을 실시할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의 경우 수행사업자를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에 한정 → 더 우수한 공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실적이 부족한 기타 사업자는 공사참여 기회 차단</p> <p>개선 긴급공사 수행사업자를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 → '공사실적이 있는 현지 사업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사업자 선정 범위 확대</p>	공사관리 규정	'20.10.
3	긴급공사 필요시 수행사업자 선정 범위 확대 (한국남부발전)	<p>기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입찰을 실시할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의 경우 수행사업자를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에 한정 → 더 우수한 공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실적이 부족한 기타 사업자는 공사참여 기회 차단</p> <p>개선 긴급공사 수행사업자를 '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 → '공사실적이 있는 현지 사업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사업자 선정 범위 확대</p>	공사관리 규정	'20.12.

〈표 II-3〉의 계속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
4	협력업체 활용업무 확대 (대한석탄공사)	기존 석탄광 공사실적에 한정하여 그 밖의 협력업체 활용이 원칙적으로 불가 개선 석탄광 공사 실적 이외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협력업체 승인	입찰 공고문	'20.4.7.
5	업무협약 종류 확대 (한국중부발전)	기존 열거된 12종 이외에는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 * ① 감사 ② 해외 신규사업 ③ 신재생에너지 ④ 기획조정 ⑤ 경영관리 ⑥ 연료계약 ⑦ 사회공헌 ⑧ 발전운영 ⑨ 연구개발 ⑩ 환경화학 ⑪ 건설관리 ⑫ 안전품질 개선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회사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 협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업무협약 관리규정	'20.12.
6	구조고도화작업 사업시행자격 대상 민간기업 확대 (한국산업단지 공단)	기존 민간기업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지방공기업, 조합·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에 한계 개선 「민법」상 법인 또는 상법상 회사로 개념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형태의 기업·기관의 사업참여를 명시적으로 허용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운영규정	'19.11.21.
7	발전소 철거공사 입찰 참가자격 개선으로 진입장벽 완화 (한국서부발전)	기존 비계구조물 해체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발전소 철거실적 보유업체로 제한 개선 비계구조물 해체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발전소 철거실적 또는 발전소 건설실적 보유업체로 완화 * 최근 10년간 발전소 철거공사(울산화력, 영남화력)	他 발전사 철거공사 입찰 참가자격	'20.12.
8	발전소 철거공사 입찰 참가자격 개선으로 진입장벽 완화 (한국동서발전)	기존 비계구조물 해체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발전소 철거실적 보유업체로 제한 개선 비계구조물 해체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발전소 철거실적 또는 발전소 건설실적 보유업체로 완화	他 발전사 철거공사 입찰 참가자격	호남화력 폐지 후 철거공사 발주 시
9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채널 확대 (한국남동발전)	기존 사내 또는 전력연구원 연구과제 제안 등 전력그룹사 위주 소통채널 운영 개선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교육기관 등 사외기관에 대한 연구과제제안 채널확대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 접수 * 외부에서 직접 과제제안 제한적 → 허용	연구개발 관리규정	'19.12.26.

〈표 II-3〉의 계속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
10	계약보증금 면제범위 네거티브화 (한국동서발전)	<p>기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납부 의무화 →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과중(계약금액 의 10~15%) 및 복잡한 업무절차(보증 서 발급비용 등)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p> <p>개선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 든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 면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자 등</p>	계약규정	'20.5.
11	계약보증금 면제범위 네거티브화 (한국남동발전)	<p>기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납부 의무화 →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과중(계약금액 의 10~15%) 및 복잡한 업무절차(보증 서 발급비용 등)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p> <p>개선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 든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 면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자 등</p>	계약규정	'20.5.
12	선금금 지급 제한 완화 (한국가스안전 공사)	<p>기존 선금금 지급 범위를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으로 한정 → 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한 업체가 수행하는 500만원 미만 계약의 경우 선금금 지급 불가</p> <p>개선 선금금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계약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계약에 대해 선금 금 지급 가능</p>	계약관리 규정	'20.5.
13	지체상금 부담 예외 사유 유연화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p>기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경 우 발생하는 지체상금 부담 예외 사유 한정적 열거* → 계약수행 지체가 불가 피한 경우에도 지체일수로 산입되어 계 약상대자 부담 * 태풍·홍수 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이행 이 지연되거나 계약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2종</p> <p>개선 지체일수 산입 제외 기준을 유연화*하는 기타유형 신설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 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p>	계약규칙	'19.10.31.

〈표 II-3〉의 계속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
14	공사계약 입찰 참가제한 개선 (한국전기안전공사)	<p>기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의 수의계약 체결 거부 시 공사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한</p> <p>개선 입찰참가 제한사항을 삭제하여 관련 공사 경쟁입찰의 공정하고 동등한 참여 기회 제공</p>	구매계약 사무규정	'20.1.2.
15	선금신청 절차 간소화 (한국중부발전)	<p>기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 오프라인 행정처리 절차 복잡</p> <p>* 선금지급 신청서, 각서 및 선금보증증권 등을 구비하여 계약의뢰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야 하는 등</p> <p>개선 오프라인 방식 외에도 간소화된 온라인 방식을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p>	계약업무 처리 기준선금 운영지침	'20.1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보도자료, 2020. 5. 6.

다. 코로나19 등 긴급물자조달 관련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 코로나19 펜데믹은 관련 긴급물자조달 및 신속한 계약절차 진행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을 야기함. 이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계약방법의 결정, 입찰보증금 면제·감액, 비대면 온라인 평가 확대, 납품대금지급 간소화 등 다방면의 적극행정 대응이 진행됨

〈표 II-4〉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공계약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대표사례	계약 원칙 (기준)	적극행정(조치)		규정 개정	면책	비고
		적극 해석	규정 초월			
등록	지문등록 면제	×		○	○	전염병 확산 우려 고려 예외 허용
	민간(마스크유통업체)의 수요기관 등록	×	○		○	비상공급 목적 예외 허용
	제조물품 현장조사	×		○	○	현장조사 유예 적용
계약 방법 결정	마스크 수의계약 체결	×	○		○	'적합한 제조사 없는 경우'로 적극 적용
	마스크 공급업체와 계약	×	○		○	생산, 공급업체 모두 인정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		○	천재·지변 등 준하는 경우로 적극 적용
	5천만원 이상 소액수의계약	×		○	○	1억원 이상 소액수의 계약 한시적 적용
입찰 단계	입찰보증금 면제/감액	×	○		○	※ 적극해석(면제), 법령개정(감액)
	기준가격 초과 인정	×	○		○	
심사·평가	협상계약 온라인평가 확대	×		○	○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예외적 허용
	건축 설계공모 온라인심사 확대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예외적 허용
계약 단계	계약보증금 면제/감액	×	○		○	※ 적극해석(면제), 법령 개정(감액)
	조달수수료 면제	×	○		○	수요기관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납품 대금 지급 간소화	조달요청 및 납품요구 단계 생략(납품 先처리)	×	○		○	생산 즉시 납품 가능
	물품납품서류 제출 생략	×		○	○	납품 즉시 대금청구 및 지급

자료: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2020. 12.)

□ 상기 자료에서 보듯 긴급상황 대응 조달의 상황에서 법령 개정 소요가 발생하는 영역이 입찰참가자격등록, 수의계약의 금액기준, 입찰·계약 보증금 면제/감액, 온라인평가 금액기준, 납품대금지급 간소화 기준 등 입찰 및 계약 전 분야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라. 혁신조달제도 관련 규제개선(조달청, 기재부)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은 당사자로 행하는 입찰·계약업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령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승인절차를 거쳐 공공계약 업무의 특례가 이루어짐

〈표 II-5〉 혁신조달제도 관련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기재부)

과제명	추진 현황	규정 개선
1.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성장유망제품군 내 로봇분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우수제품 선정 체계에 성장유망제품군은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였으나 로봇제품은 명시되지 않음 ○ (개선) 성장유망제품군 내 로봇분야 신설 논의('20) 후 수요 감안하여 우수제품 성장유망제품군 내 로봇분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조달물품 지정 공시 로봇분야 신설('21~'22)
2.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대상 및 사업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시제품 단계의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구매 후 테스트, 상용화해 주는 혁신시제품 구매 사업을 도입, 공급자제한형으로 구매('19) ○ (개선) ① (구매대상) 기존 '혁신시제품' 이외, '우수 R&D제품' 및 '기술인정우수제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ck I) 우수 R&D제품(소관부처) * (Track II) 혁신시제품(조달청) * (Track III) 기술인정우수제품(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② (사업방식) 기존 공급자제한형 이외,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수요자제한형 추가 도입(공급자+수요자제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20. 10. 1. 시행)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9조, 제24조('20. 10. 1. 시행)
3. 혁신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 제품에 대하여 우수제품 신청자격을 부여 ○ (개선) 혁신제품(혁신시제품, 우수 R&D제품) 및 '기술인정우수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 신청 자격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유망제품군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를 신설하여 혁신조달 뒷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제6호(신청제품) 및 별지 제2호의2 '가'호 개정('20. 9. 1. 시행)

〈표 II-5〉의 계속

과제명	추진 현황	규정 개선
4. 물품용역 신인도 심사항목을 유사항목으로 재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물품용역 적격심사 시 신인도 심사항목이 통일성 없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적용 가능항목 찾기가 어려움 ○ (개선) 유사목적 신인도 심사항목을 유연하게 재분류 및 심사항목에 맞춰 평가요소 재배치 * (물품) 16→6개, (용역) 14→6개로 심사항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2 별표 1~3 ('20. 4. 1. 시행)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20. 4. 1. 시행)
5.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 포기한 자 포함 ○ (개선) 국가계약법령 적용 입찰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마목 삭제('19. 7. 시행)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2조('20. 4. 1. 시행)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1조('20. 10. 1. 시행) 등
6. 융복합상품 등 신상품의 목록제조 등록 절차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물품 분류체계상 복합상품과 융합상품의 정의 및 구분이 모호 * (복합상품) 2개 이상 세부품명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신상품으로서 복합품명으로 등록(별도 물품 분류체계) * (융합상품) 기능, 재료 등 융화로 한 몸체를 이루는 새로운 상품(기존 물품 분류체계) ○ (개선) 목록화지침상 융·복합상품을 통합하여 재정의하고 99분류로 운영하여 개념의 범위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록화지침」 제2조('20. 8. 27. 시행)
7.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제조공장 분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제조공장 확인 시 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제조공장 인정 * 용도: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개선) 500㎡ 미만 공장 미등록 소기업에 대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확인 시 공장 분류에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9조 제6항 개정('20. 7. 1. 시행)

〈표 II-5〉의 계속

과제명	추진 현황	규정 개선
9. 범정부 디지털 기반 비대면 온라인 기술평가 지원(한국판 뉴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19년 e-발주시스템 전면 개방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의 비대면화 및 서비스 확대 요구 ○ (개선) 비대면 평가 확대 대비, 기능 개선 * 대면⇒비대면 온라인 제안(화상) 평가 플랫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기술평가 서비스 자원 증설(12월) 및 기능 개선 추진('21. 상반기)
10. 디지털서비스 유통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에 따라 수요기관, 조달업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몰 구축 필요 ○ (개선) 단계별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나라장터소평몰 개선으로 거래물 마련(10월) ※(2단계) 인공지능 기반 상품검색 기능한 전용 쇼핑몰 구축('21)

자료: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2020. 12.)

3. 공공계약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시장에서의 계약 규제개선은 ① 공공기관 계약 특례제도(기획재정부) ② 조달시장 참여 범위 확대 및 시장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 계약관련 규제 개선(공기업 등) ③ 코로나19 등 긴급물자조달 관련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④ 혁신제품 관련 공공계약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음

□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年 135조원(GDP대비 7.1%, 2019년 기준) 규모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입찰참여기업도 58만개 업체 수준('19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조달청 입찰참가업체 추이: ('15년) 32.0만개→ ('17년) 37.3만개→ ('19년) 57.5만개

- 다만 공공조달은 시장에서 각종 안정인증(KC인증 등), 법정의무 형식 승인·형식인증 등 법적·기술적으로 인증·유통이 허용된 상용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신산업, 기술 용·복합 제품이 빠르게 출현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조달원칙은 시장의 규제적 요소로 작용
 - 최근 계약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간의 물품·중심의 공공조달 수요가 디지털서비스 등 혁신기술, 용·복합 신산업으로 확대
 - 기존의 정형화된 상품·서비스를 전제로 규정된 입·낙찰제도가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 이에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 통과 제품이 조달청 혁신시제품 사업참여 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혁신제품의 초기 수요를 견인한 사례처럼 지금까지의 공공조달 혁신전략이 혁신제품 위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용역·시설공사 등에서 디지털혁신서비스, 혁신소프트웨어, 혁신적 공법 및 시설공사 생산체계 등으로 확대되려면 혁신 아이디어 수용이 가능하도록 공공계약제도 개선 방안이 전반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혁신적 계약·입찰제도 도입에 앞서 현행 계약제도 적용의 예외로서 시범사업이 가능한 제도적 근거 마련
 -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의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 수행
- 다만 현재 공공계약 분야에서는 신산업육성을 위해 조달청 등 중앙부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계약제도 개선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등 신속한 규제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Ⅲ. 국내외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시사점 검토

1. 해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검토

가. 영국

1) 도입 배경

-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014년 5월 29일 금융혁신 촉진을 위해 금융 혁신 프로그램(Project Innovate)을 발표
 -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를 개소하고, 핀테크 및 기존 금융 사업자의 금융규제 관련 민원사항을 지원
- 영국(런던)을 글로벌 핀테크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Mark Walport 수석과학자문관에게 정책 제언에 따라 금융사업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regulatory sandbox)을 추진

2) 개요 및 절차

- 금융서비스혁신기업들이 안전하게 신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실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사회적 편익 향상을 도모¹¹⁾

11) 배영임·신혜리, 「규제 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이슈&진단』, 제359호, 경기연구원, 2019, 7~9면.

- 절차는 ① 스타트업이 혁신비즈니스 과제 신청 ② FCA 적용 기준에 적합 여부 평가 ③ FCA와 실험방법을 협의 설계 ④ 실험과 모니터링 ⑤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개시 여부 결정 단계로 이루어짐
-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018년 ‘글로벌 샌드박스’를 제안, 2019년 1월에 GFIN(Global Financial Innovation Network, 국제금융혁신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50여개 국이 가입되어 있음
 - 혁신 금융기업들이 국외에서도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참가국의 규제기관들이 협력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함

3) 도입 사례

- 2016년부터 총 6차례에 걸쳐 153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가장 최근 연도인 2020년에는 22개 기업이 선정됨

〈표 III-1〉 영국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 업체 현황

비고	업체명	사업내용
5기	Barclays	투자자의 투자 및 포트폴리오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동기, 선호도를 알려주는 서비스
	B6	소매고객을 위한 은행계좌로, 데이터 및 행동기법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목표 설정 후 지출 모니터링 및 저축 증가 장려
	British Heart Foundation	심혈관 질환을 가진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검진 과정을 갖춘 여행자 보험 상품
	Currensea	해외여행 시 기존 은행계좌에서 낮은 이자율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직불 카드
	Digital Wealth Solutions	금융자문회사의 고객에 조언 및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통적 대면접근 방식의 보완을 통한 자문비용 조정 및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함
	Diro Labs	기존의 출처에서 온라인을 통해 모든 사람·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ID 확인 서비스로, 블록체인 기반의 중앙 정보 저장소를 통해 공유가 가능한 형태의 정보 제공

〈표 III-1〉의 계속

비고	업체명	사업내용
	Fintech Delivery Panel Partners	KYC를 등 고객의 신원확인 관련하여 여러 기업에서 기사용된 디지털 신분증의 복사 및 통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분산화 신원인증 테스트
	Fractal	DLT(분산화원장기술) 및 AI 기술을 사용한 신용 프로그램의 디지털화, 대출-금융 데이터 간 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및 부채의 유통화를 도와주는 플랫폼
	Funds4Talents	기계학습을 이용한 대출자 이전 학업 성과 및 과거 대학 동문 데이터 사용을 기반으로 고등교육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소득 기반 학자금 대출
	Jammtoday	투자자가 선택한 공급자와의 직접 투자를 도와주는 웹사이트 링크 등 로보-간접 자문을 제공하는 온라인 비교 장치
	Karma	소비자가 매달 다양한 가맹점에서 월급의 일부를 지출할 수 있게 해주는 DLT 기반 무이자 급여-현금 관리 서비스
	L&C Mortgages Limited	온라인으로 담보대출을 선택,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London Stock Exchange Group	LSDE가 운영하는 상장거래소 내에 DLT를 통합하여 증권 발행, 인수 및 거래를 위한 시장 인프라를 테스트하는 서비스
	Monergie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재정건전성 플랫폼으로, 급여주기를 변경하지 않고도 해당 월에 발생한 소득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가불 모델 포함
	Moneyline & Aviva	대출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험 상품, 지속적인 보험금 납입이 어렵거나 재정 회복력이 부족한 고객을 위한 장기 보험 혜택 제공
	Muinmos	기업들이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규제 호환성을 분류·검증하는 것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기반 RegTech 솔루션
	Nuggets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개인·결제 데이터의 저장을 테스트하고, 이를 금융 서비스 상품에 적용하는 전자상거래 결제 및 디지털 신원 확인 플랫폼
	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	소비자가 복수의 결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지급 결제 시스템
	Paypoint & LINK	LINK 네트워크를 통한 ATM 대안 서비스로 소비자는 현지 상점의 결제 단말기를 통해 잔금 조회 및 특정금액 현금 인출 가능
	Post Office	사용자에게 정부서비스 및 금융서비스상품 모두에서 사용 가능한 단일 디지털 ID를 제공, 신규 고객이 번거로운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신제품·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
	ProxyAddress	노숙자에게 임시 '고정 주소'를 제공함으로써 은행계좌 개설을 돕는 서비스로, 계좌개설을 통한 임금 수령을 가능케 해 자립을 지원

〈표 III-1〉의 계속

비고	업체명	사업내용
	Quo Money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한 재무계획 수립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금 관리를 돕는 앱 기반 서비스
	Renso	DLT 기반 부동산 투자 관리 플랫폼
	Shrap	실제 화폐 없이 무료·익명의 소액결제 가능한 모바일앱
	Standard Chartered Bank	토근화를 사용하여 소액 거래 은행 내 예금 개설을 용이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고객의 장기예금을 통한 혜택 증진 및 보다 유연한 예금 사용 도모, FSCS의 보호를 받음
	Statys	시를 이용해 중소기업 대출의 신용 및 위험평가 과정의 비용 절감,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는 기술 솔루션
	Torca	DLT를 사용한 자금 조달 과정의 간소화를 통해 증권 발행의 one-stop-shop을 제공하고, 투명성 및 실행속도의 향상을 목표로 한 플랫폼
	untied	은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득신고서의 준비 및 제출을 자동화해 주는 플랫폼
	Zilch Technology Limited	일상 생활용품 구입에 따른 지불을 용이하게 해주는 서비스로, 구입 상품에 대한 부분 결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6주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 가능
	AgeWage	가치 점수를 사용하여 연금저축액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퇴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AID:Tech	ID 검증을 통해 사기를 예방하고 지불, 기부, 할당, 추적 등을 할 수 있는 자금블록체인 기반 전자 화폐 플랫폼
	DLA Piper	디지털 자산 발행이 관련된 규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규정 기반의 RegTech 서비스
	Climate chain	오픈뱅킹을 이용하여 고객의 지출 습관을 추적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트너 업체에서 지속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6기	CrediCar	화이트 라벨 플랫폼을 통해 금융 제공 업체와 자동차 딜러가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 개별 신용 위험 및 제정에 적합한 개인별 금융 건적을 제시할 수 있는 중고차 지능형 디지털 대출 플랫폼
	Crowdz UK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인보이스를 토근화하고 재지불 경로를 제시하는 파이낸싱 플랫폼
	Faipay	NFC(근접무선통신) 카드를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과 결합하여 매장 내 및 전자 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가맹점을 위한 다중 채널 결제 서비스
	Fronted	오픈뱅킹을 사용하여 영국 소비자의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사회적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오픈뱅킹 서비스
	FundAdminChain	집합 투자 펀드를 거래하기 위한 시장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실 분산 원장 네트워크
	HipayUK	알리페이(Alibaba), 위챗페이(Tencent) 및 기타 결제 기관과 제휴하여 영국 전역의 대중교통을 위한 무료 QR 코드 결제 솔루션을 제공

〈표 III-1〉의 계속

비고	업체명	사업내용
	Hitachi Europe Limited	투자자, 대출 기관, 프로젝트 관계자 간의 '매칭 기능'과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여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하고 녹색 자산 및 블록체인에 대한 운영 정보와 자분을 녹색 프로젝트에 조달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플랫폼
	HUB Financial Solutions	저렴한 비용으로 은퇴자가 연금저축을 적절히 운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 조언 서비스
	Huozhi	공식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위기 지역의 가족, 유급 근로자 및 기업을 위한 필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자금 지원을 촉진하는 플랫폼
	Mintago	직원들에게 재정적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교육과 도구를 제공하며, 고용주가 제공하는 재정적 웰빙 플랫폼
	Moneyfold	웹 사이트 주소를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환하여 URL에 지불할 수 있게 하는 DLT 기반의 전자 화폐 솔루션
	My Ahmed Ltd	무슬림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Zakat 기부 계산 도구가 있는 Sharia 호환 전자 화폐 플랫폼
	Nest Insight	롤오버 기능을 통해 직장 연금과 연결된 급여 공제 긴급 저축 도구에 자동 등록되며, 이는 연금 기여도를 높이면서 단기 재정 탄력성을 지원하는 서비스
	NestEgg	재정 건강 지표를 활용하여 대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취약한 대출자의 재정 상태 및 신용 프로필을 개선하는 모바일 앱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Project Pycor	디지털 자산 보관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산형 허가 네트워크
	StudentFinance	학생들이 최저 소득 기준 이상으로 소득을 올릴 때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유연한 모델인 '소득 분배 계약'을 통해 고등 교육 등록금을 조달하는 디지털 플랫폼
	Weather Solutions	평상시보다 추운 겨울 동안 높아진 에너지 비용을 보상하는 파라메트릭 날씨 보험 상품
	YourBlock	자동차 보험,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구를 제공하는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중심 플랫폼

자료: 영국 금융감독청(FCA)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https://www.fca.org.uk/firms/regulatory-sandbox/>

4) 평가¹²⁾

- 2017년 10월 평가보고서에서 비용절감, 금융 접근성 향상, 소비자 이익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 은행 고객정보 부족으로 테스트 결과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점, 금융기관 간 시스템이 상이하여 정보의 통합이 불가능한 점, 테스트 과정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발견했을 경우에 스타트업이 즉각 반응하기 어려웠던 점은 한계점

나. 미국

1) 개요

- 미국은 아직 전체 연방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2018년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규제 개선 권고안에 규제 샌드박스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후 각 주별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음¹³⁾
 - 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현행 규제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덜 규제된 환경을 조성하고, 스타트업 기업이 제공한 데이터가 바탕이 되어 규제 법안을 적절히 수정하는 데 있음
- 애리조나주가 최초로 독자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참여 기업에 대출, 투자자문, 송금 등을 적용한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24개월간 제공할 수 있게 함
 - 2020년 기준 애리조나주, 와이오밍주, 유타주, 플로리다주, 웨스트

12) 배영임·신혜리, 「규제 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2019, 9면.

13) *Forbes*, "It's Time For A Federal Fintech Sandbox," <https://www.forbes.com/sites/forbesfinancecouncil/2019/12/06/its-time-for-a-federal-fintech-sandbox/?sh=11955a686e1e>

버지니아주, 네바다주 등 6개 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 가장 대표적인 애리조나주의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주마다 약간씩 상이한 시스템과 기준을 가지고 있음¹⁴⁾

-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별 규제 담당기관과 협력해 규제 샌드박스 체계를 설계하고, 통합적인 규제를 수립, 조정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지원할 계획

2) 도입 사례

- 애리조나주의 도입 사례

기업명	시작일	사업 내용
Align Income Share Funding	2019년 3월 20일	고객의 예정된 기간의 미래 수익의 몇 %를 지불하는 대신, 소득 감소 및 실업 기간을 포함한 예기치 못한 사태에 검증된 소비자에게 고정된 금액을 제공하는 소득 공유(SA) 비즈니스 모델
Zona Digital Commodity, LLC	2019년 7월 11일	허가된 의료용 마리화나 제공자들을 위한 현금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판매와 연결된 송금 서비스를 활용하는 제정 서비스 '클럽'
WithClutch, LLC	2020년 1월 8일	사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기 위한 자동차 소매 설치 계약에 대한 재융자(refinancing) 비즈니스 모델

자료: 애리조나 핀테크 샌드박스 홈페이지, <https://www.azag.gov/fintech/participants>, 검색일자: 2021. 2. 18.

14) Native American Financial Services, "More States Establishing Regulatory Sandboxes for Fintechs," <https://nativefinance.org/news/more-states-establishing-regulatory-sandboxes-for-fintechs/>

다. 일본

1) 도입 배경¹⁵⁾

- 초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문제가 일본사회의 장애요인으로 전망됨. 이에 수반하는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술을 적용을 목표로 2017년 6월 ‘미래투자전략 2017’을 통해 ‘Society 5.0 비전’을 수립
- ‘Society 5.0 비전’의 실현을 위해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기술의 실용화와 비즈니스 모델 실증(Try First)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2) 개요 및 절차

-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는 지역한정형과 프로젝트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대상 및 기반 법률이 상이함
 - 지역한정형 규제 샌드박스는 「국가전략특구법」에 기반해 2013년부터 시행 중이며,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규제개혁을 추진, 10개의 국가전략특구가 운영 중
- 일본의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개혁제도의 제약을 극복하는 실증기반의 규제완화정책이며, 핀테크 외에도 다양한 미래전략 분야 포함
 - 2017년 「국가전략특별구법」에서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다섯 가지 원칙을 규정함

15) 구자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20, 9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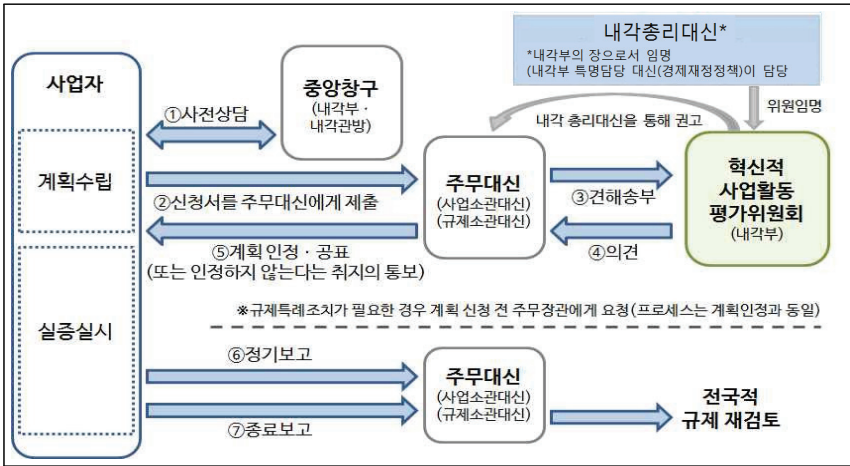
〈표 III-2〉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다섯 가지 원칙¹⁾

다섯 가지 원칙	내용
실증우선 주의	기존 규제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증우선(Try First)의 취지를 원칙으로 함
위험요소 관리	실증과정에서의 위험요소 관리를 위해 참가자에게 실증내용과 리스크를 설명한 뒤 동의(informed consent)를 확인한 후 진행하도록 설계
정부의 일원체계 구축	지방정부간 효과적인 조정권한을 발휘하고 혁신 사회실증에 대한 성장을 위해 수평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일원적 추진 체계 구축
실증성과의 정책 반영	실증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법의 정비나 정책입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과정에서 획득하는 데이터 등은 사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산화
행정조직의 수장 참여	규제혁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담당 행정조직의 수장이 참여

자료: 일본 성장전략포털사이트 규제 샌드박스제도 홈페이지(배영임·신혜리, 2019 재인용)

- IoT, 블록체인, 로봇 등 신기술의 실용화나, 플랫폼 비즈니스, 공유경제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실시가 현행 규제와의 관계로 곤란한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규제관청의 허가하에 실증을 진행·실증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활용해 규제 수정에 반영함
- 사업자는 일원화된 창구로서 일본 경제재생 종합사무국 내 설치된 ‘신기술등사회실장추진팀’을 통해, 신기술 계획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거쳐, 이후 1개월 이내에 인증서를 교부(외국·외자계기업의 경우 JETRO를 통해 신청)
 - 신청서에는 실증내용, 참가자의 범위 및 동의 취득방법, 실증기간과 장소, 실증에 관한 규제법령, 실증에 필요한 규제 특례조치의 내용, 실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

[그림 III-1]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자료: 일본 성장전략포털사이트 규제 샌드박스제도 홈페이지(배영임·신혜리, 2019 재인용)

3) 도입 현황

- 지역한정형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사례는 없으나,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이전 근미래기술 분야로 규제완화 및 실증실험이 시행, 시행의 성과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기반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¹⁶⁾
- 수상관저 산하의 성장전략 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증 인정 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0개의 과제가 실증 인정됨

〈표 III-3〉 규제 샌드박스 인증 사례(2021년 4월 기준)

기업명	인정일	과제명
파나소닉(주)	2019년 12월 26일	IoT 사회 실현을 위한 고속 PLC(전력선통신)로 연결되는 가정용 기기
(주)MCIN	2019년 12월 26일	진단키트와 비디오 통신을 연계한 인플루엔자 온라인 검진 권유

16) 김윤경, 『한·일의 혁신관련 규제개혁 비교: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2020, 29면.

〈표 III-3〉의 계속

기업명	인정일	과제명
(주)Crypto Garage	2019년 01월 18일	가상화폐와 법정통화를 동시에 결제 가능한 결제 플랫폼 구축
(주)카리우스 칸사이전력(주)	2019년 03월 06일	사칭에 의한 부정한 계좌 방지
(주)엔비프로홀딩스 (주)신에코	2019년 04월 08일	IoT를 활용한 차세대 광역 리사이클
사스메도(주)	2019년 04월 22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임상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주)KMSI 의료법인사단KNI	2019년 06월 28일	생체인증을 이용한 본인의사에 기반한 구급의료
(주)JustInCase	2019년 07월 05일	비상사태 시 상호부조를 위한 대규모 P2P 특약
택지건물거래업자 (113인)	2019년 09월 20일	부동산 임대계약 시의 서면교부의 전자화
(주)DADA	2019년 10월 17일	캠핑카의 공간 활용
(주)mobby ride	2019년 10월 17일	전동 킥보드 공유사업의 실시를 위한 주행
(주)Luup	2019년 10월 17일	전동 킥보드 공유사업의 실시를 위한 주행
glafit(주), 와카야마시	2019년 10월 17일	인력과 전동모드의 전환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바이크의 자전거 레인 질주
Frich(주) 외 소액단기보험사 2개사	2020년 01월 24일	개인이 소액출자를 통해 상호부조하는 P2P보험
Frich(주)	2020년 03월 13일	개인이 소액출자를 통해 상호부조하는 P2P보험
(주)마이크로블러드사이 언스, 시스메틱스(주), (주)돔	2020년 05월 19일	락비 등의 국제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한 실시간 체혈검사
(주)링크스	2020년 06월 26일	SMS를 이용한 채권양도 통보
(주)미라이진라보 후지네츠공업(주)	2020년 06월 30일	잠재적 IT 스킬을 가진 장애인의 고용기회 창출
gooddays홀딩스(주)	2020년 08월 06일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월세임대 사업에 관한 정기건물임대차계약 서면의 작성
일반재단법인 일본헬스케어협회	2020년 10월 05일	야채, 과일 등의 일반적 특징을 표시하는 POP에 관한 자율 매뉴얼의 작성

자료: 일본 성장전략포털사이트 규제 샌드박스제도 홈페이지

4) 규제 샌드박스 최근 사례

- 야채, 과일 등의 일반적 특징을 표시하는 POP에 관한 자율 매뉴얼의 작성에 관한 실증(일본헬스케어협회)
- 주관·규제부처: 농림수산대신·내각총리대신(소비자청)
 - 주요내용: 소매점에서 야채, 과일 등이 가지는 함유 성분과 일반적인 기능을 표시하는 POP 혹은 QR코드를 통한 정보 사이트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적절한 광고활동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촉진하며, 소비자의 야채 섭취량을 증가 및 건강 개선에 공헌. 생산자의 경쟁력이나 부가가치 향상을 목표로 함
 - 관련규제: ① (「식품표시법」 제5조) 식품관련사업자 등은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② (「건강증진법」 제65조) 판매되는 식품을 광고 또는 표시할 경우, 건강의 유지, 증진의 효과 등을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대응하여 현저하게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거나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③ (「부당경품류 혹은 부당표시방지법」 제5조) 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 상품 혹은 용역의 품질, 규격 등의 내용에 대해서 일반소비자에게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량하다고 표시거나, 사실과 다르게 동종 혹은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에 비해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표시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소비자의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 규제특례: 6개월 간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10개 이상의 점포에서 실증을 위한 특례를 부과함. 신청자는 매뉴얼을 작성해 소비자청과 제3자위원회와 의견교환을 실시, 필요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여 책정. 이때 의약품 혹은 기능성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명확히 없는 야채가 가지는 특정 성분의 유무와 일반적 특징만을 표기. 협회는 시행 전 각 소매점을 담당하는 보건소에 실증에 대한 취지를 통지해야 함. 해당 점포의 점주는 매뉴얼 설명회에 참가해야 함. 소비자 및 보건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그 내용과 대응상황을 익월까지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함. 긴급하게 취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고해야 함. 실증결과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함

자료: 일본 성장전략포털사이트 규제 샌드박스제도 홈페이지

라. 싱가포르

1) 도입 배경¹⁷⁾

- 싱가포르는 스마트 국가 건설을 추진하며 금융 분야에서 혁신유발형 금융환경 조성을 꾀하기 위해 싱가포르 통화청이 2016년 6월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시행안’을 발표
- 싱가포르 통화청은 관련 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11월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 및 원칙, 평가요건, 절차 등을 제시

2) 개요

- 싱가포르 통화청은 5개 주요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선정

〈표 III-4〉 싱가포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주요내용
혁신성	해당 핀테크 솔루션이 기술적으로 혁신적이거나 혁신적으로 적용 가능한가?
	해당 핀테크 솔루션이 시장 내 중대한 문제, 이슈를 해결하거나 소비자 또는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주는가?
서비스지역	신청자는 샌드박스 기간 완료 후 해당 핀테크 솔루션을 싱가포르 금융 시장 내에서 출시할 의사가 있는가?
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 이익 보호, 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샌드박스 수행에 필요한 경계 조건이 명확히 정의되었는가?
위험요인 파악	해당 핀테크 솔루션으로부터 예상되는 주요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완화하였는가?
출구 전략	핀테크 솔루션 중단 또는 샌드박스 기간 완료 후 보다 큰 규모의 시장에 진출할 경우를 대비한 출구 및 전환 전략이 명확히 명시되었는가?

자료: 구자현 외(2016); 구자현(2020) 재인용

17) 구자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20, 81면.

〈표 III-5〉 싱가포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주요 특징

선정 기준	주요내용
도입목적	금융기술의 혁신과 안전한 사용을 통한 스마트 금융센터 조성 시스템리스크와 소비자 보호 강조
중점 추진 목표	혁신 금융상품의 본격적인(broader scale) 시장 출시
금융규제 운용 유연성	특정 법적 및 금융규제적 요구조건 완화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폭넓은 권한 보유
면제자격요건	신생 및 기존 기업 모두 가능(기존 금융기관 강조)
기간	기업의 샌드박스 신청상황 등에 따라 개별 결정
운영방법	개별 기업에 대해 건별 적용
신청기업 조건	신청기업은 샌드박스 기간 완료 후 해당 핀테크 솔루션을 싱가포르 내에서 출시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할 필요
테스트 종료	참여기업 MAS가 테스트 결과에 만족하고 참여기업의 관련 법적, 규제 요건 준수 시, 해당 핀테크 솔루션은 시장출시 시 적용 가능 테스트 기간 중 종료 가능

자료: 구자현 외(2016); 구자현(2020) 재인용

3) 도입 현황

- 싱가포르 통화청은 시행 이후 7개의 핀테크 스타트업, 1개의 기존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 총 8개의 기업을 선정

〈표 III-6〉 싱가포르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 기업과 분야

기업명	분야	기업명	분야
Propine Technologies	디지털자산, 예약업무	Metlife(Lumenlab)	보험
ICHX Tech	블록체인, 예약 등	Krystal, AI	AI 기반 자산관리
PolicyPal	블록체인	Thin Margin	온라인 환전 · 송금
Inzsure	보험중개업	TransferFriend	온라인 환전 · 송금

자료: 구자현 외(2016); 구자현(2020) 재인용

4) 평가

- 싱가포르 통화청은 엄격한 기준으로 신중하게 선정한 것으로 평가¹⁸⁾
 - 당초 기대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 규제 샌드박스 패스트 트랙(Sandbox Express)를 도입하기도 함
- 3개의 핀테크 스타트업은 졸업 이후 3,100만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내며 활발한 투자유치 및 금융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2. 국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검토

가. 개요 및 주요성과¹⁹⁾

- (연혁) 우리 정부는 2017년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규제개혁의 의지 표명
 - 우선허용과 사후규제를 통해 혁신기술과 혁신적 사업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제도적 혁신으로서, '19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법적 근거 마련
 -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되어야 할 근거와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사고를 구현하는 규제방식을 의미함²⁰⁾
 - 규제 샌드박스 법적근거는 「정보통신융합법」 등 4대 규제 샌드박스 입법내용을 총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개정을 거쳐,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에 적용(19. 7. 17.)

18) 구자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20, 84면.

19) 대한민국 정부, 『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 2020.

20) 김대인·최승필·임현,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Ⅰ)』, 제3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규제체제 및 거버넌스 개편, 한국법제연구원, 2017, 67면.

〈표 Ⅲ-7〉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체계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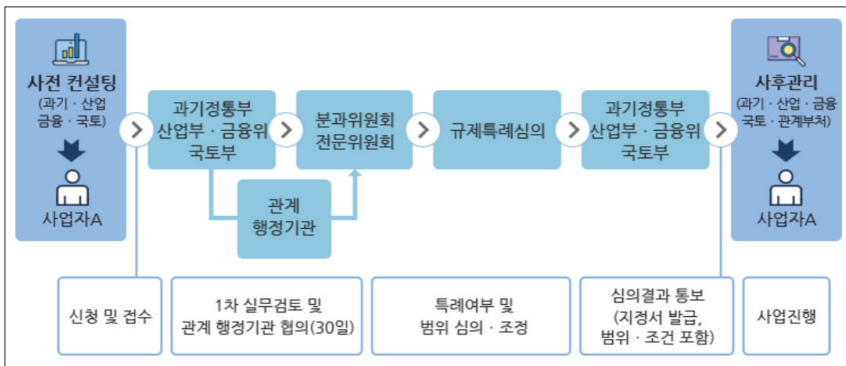
		제도총괄		시행일: 2019. 7. 17.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	금융혁신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스마트도시법」
시행일	2019. 1. 17.	2019. 1. 17.	2019. 4. 17.	2019. 4. 1.	2020. 2. 27.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심의위원회 (위원장)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장관)	산업융합규제 특례심의위원회 (장관)	심의위원회 (장관) 특구위원회(총리)	혁신금융 심사위원회 (금융위원장)	국가스마트 도시위원회 (국토부장관)
신청창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지방중기청 산업기술진흥원	핀테크지원센터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지원유형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신속확인	스마트규제 혁신지구지정 및 사업 승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자료: 1. 각 법령: 규제정보포털; 관계부처 합동(2020. 1. 23.) 이용하여 정리
2. 성과자료: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2021. 2. 2.)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 (절차) 규제특례 신청 및 접수* ⇒ 규제특례심의 ⇒ 사후관리

* 분야에 따라 특례 신청 이전에 공모 또는 사전 컨설팅 절차 마련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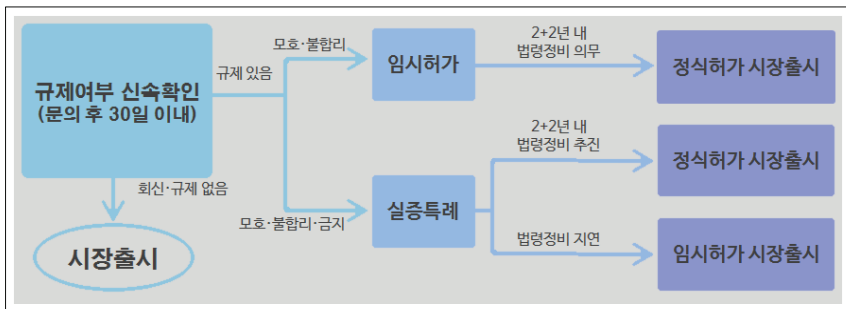
〔그림 Ⅲ-2〕 한국 규제 샌드박스의 절차



자료: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 (규제 특례 접수 시 정부 지원 절차) 접수된 규제 특례 신청에 대해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의 절차로 대응
- (신속확인) 융합 신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화와 관련해 신청인이 관련 허가 및 규제 등의 존재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관부처에 신청할 경우 관련 내용을 일괄 확인하여 신속히 회신함
 - (임시허가) 융합 신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사업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나, 관련 제도나 법령이 불합리하거나 모호하게 해석될 경우 일정 기간 우선적 시장진출을 허용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정식허가에 임함
 - (실증특례) 융합 신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 실증 특례제도를 통해 해당 법령의 불합리성이나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임시허가와 구별되는 실증규제특례의 주요한 차이점은 현행 규제에서 금지·불허인 사업이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할 때 활용된다는 것²¹⁾임

[그림 III-3]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흐름도



자료: 육상현,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전자공학회지』, 제46권 제6호, 대한전자공학회, 2019, 32면.

21) 이재훈·정희영,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와 정책적 제언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입법·제도 개선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489호, 2020, 298면.

□ (규제 샌드박스 집행 실적) '19. 1. 도입 이후 '21. 1. 현재까지 410건 과제 승인, 1조 4천억원 이상 투자유치, 2,800여 명 일자리 창출의 집행 실적이 집계됨(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2021. 2. 2.)

분야별 국내 규제 샌드박스 집행 사례

- ❶ (ICT융합)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실증특례)
- ❷ (산업융합) 도구공간: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
- ❸ (혁신금융) 신한카드: 안면인식 결제서비스(실증특례)
- ❹ (규제자유특구) 에스아이셀: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경북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 ❺ (스마트도시) 현대차 컨소시엄: 수요응답형 버스(I-MoD) 서비스(실증특례)

□ '19. 1.~'20. 1. 2년간 총 51차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위원회가 개최되어, 총 410건('19년 195건, '20년 209건 '21년 6건)의 과제가 승인됨

- 유형별: 실증특례 332건(81%), 임시허가 48건(12%), 적극행정 30건(7%)
- 분야별: 혁신금융 137건(33%), 산업융합 102건(25%), ICT융합 90건(22%), 규제자유특구 65건(16%), 스마트도시 16건(4%)
- 기술별: 에너지 42건(10%), IoT 39건(10%), 의료바이오 33건(8%), 빅데이터 32건(8%), 블록체인 26건(6%), AI(6%), 기타 212건(52%)
- 규제부처는 금융위가 118건(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국토부·산업부·식약처·복지부 순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274건(67%)으로, 대기업 116건(28%), 공기업 20건(5%)

□ 규제특례를 통한 실증테스트 결과 등이 입증된 60건의 승인과제(규제법령 31개)는 신속히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나.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1)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꾀함
- (규제 신속확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시함(제3조의2)
- (임시허가) 신상품 및 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이 기존 법에 없거나 혹은 기존 규정에 저촉되어 사업 허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37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해당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과 기술적 검증 위해 승인만으로 관련 규제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음(제38조의2)
- (일괄처리 제도) 다양한 융합기술이 적용되어 두 개 이상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에 따른 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일괄처리제도 도입(제36조의2)

2)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신속허가 및 적극행정 사례

□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에비드넷)

- 주관·규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 주요내용: 의료기관 내 구축된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의료 통계값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데이터심의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요청
- 관련규제: 「생명윤리법」 제2조·제15조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관련규정 확인: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값은 익명정보로서 해당 법률 및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

□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신세계엘앤비)

- 주관·규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세청
- 주요내용: 신세계엘앤비는 주류전문판매점(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를 개발.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주류전문소매업자는 와인잔, 치즈 등 주류 관련 용품 판매는 가능하나, 무알콜 주류의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 관련규제: 무알콜주류는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에 의해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는 등 주류와 유사한 규제
- 관련규정 확인: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전문소매업자의 취급품목에 무알콜주류를 추가하는 유권해석 내림(2020. 9. 15.)

자료: 규제정보포털, 「규제 샌드박스 현황」

3)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시허가 사례

□ GPS기반 애플미터기(코나아이)

- 주관·규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GPS 위치정보를 기반(OBD 등 오차 보정)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애플미터기를 택시미터기로 적용, 승객은 '지역화폐 앱'으로 택시 호출 및 결제
- 관련규제: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제95조)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의 애플미터기의 관련 기준은 없어 사용·출시 불가
- 규제특례: 택시 호출 기능이 있는 지역화폐 앱과 연계해 코나아이의 'GPS 기반 애플미터기'를 택시 및 승객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시허가 부여
- 부가조건: 인천 지역화폐(인천e음) 앱에 도입 후 택시 1천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추가 지역(부산 등)은 해당 지자체(지역화폐 소관부서)와 협의 후 서비스 도입, 국토부의 애플미터 검정기준(안)에 따른 적합판정을 받은 후 사업 개시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신한카드)

- 주관·규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 주요내용: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신한카드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운전면허 자격 및 개인 신분확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관련규제: (「도로교통법」 제8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
- 규제특례: 개인정보 유출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방지 등 체계를 갖추고 사업을 개시하고, 세부 구축·시스템 연계 방안 등은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지속 협의
- 부가조건: 기존 실시허가 취득 개발업체와 사용·검증방법·범용성 등 협의 필요

자료: 규제정보포털, 「규제 샌드박스 현황」

4)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

□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우아한형제들)

-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주요내용: 카메라와 센서를 부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위치·경로를 인식하며 음식을 수령·배달하고, 자율주행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 관련규제: (「도로교통법」)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하므로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 (「공원녹지법」) 공원 내 동력장치는 30kg 미만 동력장치만 출입이 가능하므로, 음식 등 적재 시 최대 약 50kg인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실증지역 내 공원에서 주행 불가, (「개인정보 보호법」)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음식 배송 시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영상 촬영 필요
- 규제특례: '우아한형제들'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실증범위) 서울 건국대학교, 수원 광고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실증범위 확장 시 관계부처와 협의

□ 공유주방 서비스(위대한상사)

- 주관·규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내용: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 조리된 음식은 매장 방문 고객 또는 배달 주문 고객에게 제공
- 관련규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식품을 제조·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가 가능하여 동일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 불가능
- 규제특례: 위대한상사가 '공유주방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위대한상사의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공유주방)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실증범위) '다동 및 성수 지점'에 한정하되, 추가 지점 설립시 식약처 협의 하에 '다동 및 성수 지점'과 동일한 특례 적용 가능, 추가지점을 설립하더라도 최대 100개 지점으로 한정

자료: 규제정보포털, 「규제 샌드박스 현황」

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1)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산업융합촉진법」은 새로운 융합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신산업 육성, 글로벌 시장 선점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규제 신속확인)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 확인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0조의2)
- (임시허가) 신상품 및 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이 기존 법에 없거나 혹은 기존 규정에 저촉되어 사업 허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10조의5)
- (실증을 위한 특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허가 근거가 되는 기준·요건·규격 등이 없거나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지역이나 규모, 기간 내에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제10조의3)

2)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신속허가 및 적극행정 사례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8월 27일(목) 20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14건의 실증특례, 1건의 임시허가 안건을 승인²²⁾
 -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라, 접수로

22)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reareg/222072615072>.

부터 최종승인까지 통상 2~3개월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평균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2020. 1. 2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동일 사례의 경우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고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적용

□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쉐코)

- 주관·규제부처: 산업통상자원부·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 주요내용: 원격제어가 가능하며 소형 유회수기가 탑재되어 있어, 방제인력과 흡착포를 사용하지 않고 기름을 회수할 수 있는 로봇을 해안 인접공장의 소규모 해양기름 유출사고 시, 기존 대형 유회수기가 회수하고 남은 소량의 기름 잔재물 회수에 투입
- 관련규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해양방제를 위한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시, 선박, 장비(유회수기, 고압세척기 등), 자재(오일펜스, 유흡착재) 필요, 소규모 기름유출 시 유회수기 포함 원격조종 로봇으로 방제작업을 하므로 선박·유흡착재 등이 필요 없어 소규모 방제업의 등록요건 필요 여부에 대해 문의
- 관련규정 확인: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방제활동 시에는 해양오염 방제업 등록이 없어도 된다는 '규제없음' 의견 제시
- 부가조건: 향후 실증사업을 통해 해당 장비가 기존 방제업 장비와 동일한 성능을 가졌음을 입증할 시, 이를 같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썬픽셀디스플레이)

- 주관·규제부처: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 주요내용: 일반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촬영을 통해 서버에서 딥러닝 기반 솔루션으로 분석하여 안구굴절검사를 진행하고 안구굴절 이상 위험성(근시·난시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 관련규제: 「의료법」 스마트폰 의료용 앱을 활용한 안구굴절검사에 대한 「의료법」상 근거(모바일 앱 활용 안구굴절검사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 '원격진료' 해당·가능 여부)가 불명확
- 관련규정 확인: 보건복지부는 가정 내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스스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가족인 자녀를 대상으로 안구굴절검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상 규제가 없다는 입장

자료: 규제정보포털, 「규제 샌드박스 현황」

3)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시허가 사례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 주관·규제부처: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유무선통신장치, 첨단운전자보조장치, 파워크레인/구동계 관련 제어장치, 사시제어장치, 바디제어장치, 전원제어장치, 에어백제어장치 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
- 관련규제: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및 정비작업 금지
- 규제특례 및 부가조건: ① 자동차의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테슬라코리아의 책임하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수행 ②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OTA 적용 시에도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 제출(전용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 전송) ③ 리콜(「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해당할 경우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신고·통지 ④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제작 결함의 시정' 또는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튜닝'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동차관리법령 준수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인하대병원)

- 주관·규제부처: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 주요내용: 근로자, 유학생, 관광객 등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진단·자문·예후관리 등 비대면 진료서비스(환자-의료인간 전화, 화상 통화 등을 통해 증상에 대한 상담, 일반의약품 안내, 처방전 발급, 국외(현지) 의료기관에서 받은 1차 진단에 대한 2차 소견 등) 제공
- 관련규제: 「의료법」 제17조, 제17조의2, 제33조, 제34조)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의 발부가 가능하며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 가능(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의료인 간에 한해 예외적 허용 중)
- 규제특례: ①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전 해당국의 법령을 확인하고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②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요청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

자료: 규제정보포털, 「규제 샌드박스 현황」

4)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

- 공유미용실 서비스(제로그라운드(주) 및 19개사)
 -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규제부처: 보건복지부
 - 주요내용: 1개 영업장 내 다수 사업자(미용사)가 입주하여 공용시설(삼푸실, 열펌 기계 등) 등을 공유, 신청기업은 미용사에 최적화된 사업 환경을 제공하고, 입주 미용사들은 각자 사업권을 갖고 독립경영
 - 관련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1개 사업장 및 시설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음
 - 규제특례 및 부가조건: (책임보험)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각 미용 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공동책임) 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며,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쥬오픈그룹)
 - 주관·규제부처: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 주요내용: 모바일 플랫폼 기술 활용, 자가용 운전자들이 본인의 자동차를 광고 매체로 제공, 광고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 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광고주와 자가용 운전자들을 중개하는 O2O 플랫폼 서비스
 - 관련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①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의 교통수단 종류 및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규정 ②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의 광고가 아닌 타인의 광고를 집행할 수 없도록 제한 ③ 자동차의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한
 - 규제특례 및 부가조건: (광고물 표시 허용 범위) 차량 본체 양 측면, 후면, 면적의 1/2 이내이며, 유리창 부착 금지, 실증특례 관련 안내 간결한 문구 삽입 및 부착 필수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서울특별시)
 - 주관·규제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내용: 서울 도심 내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 관련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규제특례 및 부가조건: ① 방호벽 및 안전장치 설치 등 이격거리 대체 안전기준 마련·이행 (안전기준) 서울시와 가스안전공사가 실증사업 진행 전, 해외(일본·미국·유럽 등) 도심 수소충전소의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 (방호벽) 설치 위치·높이·구조·두께·재질 기준 등 (안전장치) 긴급차단장치 2중설치, 압력방출설비, 가스온도상승방지 장치 등 ② 실증기준에 따라 가스안전공사 및 지자체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 및 고압가스 허가 실시 ③ 업계·학계·정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위원회의 단계별 검증내용 및 결과를 산업부로 승인 요청

자료: 규제정보포털, 「규제 샌드박스 현황」

라. 지역혁신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1) 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됨
-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및 도 등을 대상으로 ‘규제프리존’이라 불리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전제로 하여, 해당 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특례 조치를 적용(제72조 내지 제75조)
- 우선허용 사후규제원칙이 적용되며(제4조), 또한 규제의 신속확인(제85조), 실증을 위한 특례조항(제86조) 및 임시허가에 관한 내용(제90조)
- 2021년 현재까지 임시허가와 적극행정 사례는 없음

2) 지역혁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

-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실증(주에치에프알 등 17개 기업 및 기관)
 - 주관·규제부처: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요내용: 5G NR-U와 Wi-Fi 6E기반 스마트공장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차세대 스마트공장 제조서비스 실증
 - 규제특례: ① 6GHz 대역에서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실내 전파출력(250mW→1W) 상향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② 6GHz 대역에서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실내 전파밀도(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2dBm/MHz→8dBm/MHz) 상향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
 - 부가조건: 전파 혼·간섭 가능성을 경감하기 위해 통신 시 채널폭을 80MHz 이상 사용, 사업 추진 전, 국립전파연구원의 협조 하에 필드테스트를 거쳐 실

사용이 가능한 주파수 폭을 특정

□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거래 실증(㈜그리다에너지 등 12개 기업 및 기관)

- 주관·규제부처: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 주요내용: ①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거래 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② '전기저장장치(ESS)' 발전소 제어기술 개발 및 실증 ③ 빅데이터 기반 ESS발전 종합운영상황실(TOC) 운영 기술 실증 ④ ESS발전 기반 다양한 사업자 간 전력 직거래 실증
- 관련규정: ① 전기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자에 대한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 특례(「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근거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허가의 심사기준 또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개정 필요) ② ESS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와 관련한 특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전력거래(근거 법률), 「소규모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3조 전력거래 방법(산업부고시_개정 필요)
- 규제특례: ① 개별 태양광 발전을 집적하기 위한 전기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자에게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② ESS 발전사업자가 전력 생산자(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나 사용자(전기차충전사업자, 공공건물 등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트위니 등 5개 기업 및 기관)

- 주관·규제부처: 중소벤처기업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도심공원 특화형 실외로봇 서비스) 자율주행 인프라가 구축된 공원에서 배달, 방역, 보안순찰 등 실외로봇 서비스 상용화 실증, (실외로봇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자율주행 로봇의 충전과 주행 체계 등을 표준화하고 통합 관제·데이터 처리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
- 관련규제: ①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공원 내 출입 등 허용 특례 ②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행 중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특례
- 규제특례: ① 공원 내 출입과 로봇을 이용한 상행위 허용 ② 수집한 데이터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익명화된 학습영상의 외부 개방

자료: 규제정보포털, 「규제 샌드박스 현황」

마. 금융혁신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1) 개요

- 금융위원회 소관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은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금융 분야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선도할 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등장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들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제정됨
- 기존의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정의됨(제2조)
- (혁신금융)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 범위 내에서 금융 관련 법령에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사업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됨(제16조)
- (규제특례)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지정 시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적용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제17조)
- 「금융혁신법」상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법령과는 다른 이질적인 성격을 가짐

□ 모든 사업이 혁신금융사업으로 분류되므로 임시허가와 적극행정 사례는 없음

2) 금융혁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

□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실명확인 서비스(KB증권)

- 주관·규제부처: 금융위원회
- 주요내용: 비대면 실명확인 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
- 관련규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등
- 규제특례: 비대면 금융거래 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5가지 실명확인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부가조건: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사진의 위·변조 여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안면인식기술을 적용, 실명확인 증빙자료(인증시점 및 고객이 촬영한 사진 포함) 및 보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비스 지정 후 2개월 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네이버파이낸셜)

- 주관·규제부처: 금융위원회
- 주요내용: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 구매 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과 대금결제액 간의 차이(결제부족분)를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
- 관련규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조 제1항) 선불전자는 대가를 추후에 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고,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 규제특례: ①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③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 부가조건: ① (서비스 제공범위) 1인당 후불결제 한도 최대 30만원, 구매품목 범위 제한 등 ② (소비자 보호) 부정거래 방지 및 대가수취 금지 등 ③ (리스크 관리) 분기별 총여신잔액은 사업자 직전분기 총 결제규모의 20% 이하로 제한 등

자료: 규제정보포털, 「규제 샌드박스 현황」

바.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1) 개요

- 국토교통부 소관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을 통해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모함(제2조의11)
 -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스마트혁신사업’(제2조의9),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사업을 ‘스마트실증사업’(법 제2조 제10호)이라 함
- 접수된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법」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모두 임시허가에 해당되지 않음

2)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신속허가 및 적극행정 사례

-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한국전력공사)
 - 주관·규제부처: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요내용: 스마트계량기를 활용한 공동주택 에너지 3/5종 통합 원격검침 구축 및 통합관리 서비스, 공동주택 세대별 에너지계량기를 스마트미터게이트웨이에 유무선으로 연결해 세대별 에너지계량 데이터 수집, 세대별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에너지 데이터 실시간 소비패턴 분해 및 분석 등 부가 서비스 이용

- 관련규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통한 타인 통신매개는 금지되어 있으며 비영리, 공익목적 정보 이용 및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나 스마트게이트웨이가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분류되는지가 불명확함
- 관련규정 확인: 한전이 사용하고자 하는 스마트미터게이트웨이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닌 일반 전기통신설비로, 별도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
-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유비온)
 - 주관·규제부처: 국토교통부·교육부
 - 주요내용: 스마트시티 미래교육 체계 정립을 위한 에듀테크 클라우드① OSMD형 고교학점 신청-관리서비스를 운영, 학생이 직접 교육과정을 검색하고 수업을 신청하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첨삭 ②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과정에 교사 외 교사가 수업 진행 ③ 교육과정 내 수업 유형에 따라 교과서 없이 별도 학습자원으로 수업 진행
 - 관련규제: 현행 법령에서는 교원 외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 등을 지정할 수 있으나 자격기준이 존재하며, '일반시민'까지 채용 가능하다는 명확한 기준이 부재
 - 관련규정 확인: 지역 교육청이 수립한 교원 외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 채용기준을 참고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시민 강사 활용 가능

자료: 규제정보포털, 「규제 샌드박스 현황」

3)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

- 보행자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사고다발지역 스마트교통안전 차량과속경보시스템(㈜퀵게이트 컨소시엄)
 - 주관·규제부처: 국토교통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LED 전광판 기반의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를 활용한 스마트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
 - 관련규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 규제특례: 안개가 잦은 곳 등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를 보행자 보호구역에 설치토록 실증특례 허용
 - 부가조건: ①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설치장소에 융통성 부여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규정된 안전표지를 변형하는 것은 불가

□ 퍼스널 모빌리티용 무선충전 거치대 실증(주) 그린파워 컨소시엄)

- 주관·규제부처: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 주요내용: 전동킥보드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용자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무선 충전거치대에 반납 시 별도 조작없이 자동으로 충전
- 관련규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및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 규제특례: ① 규제특례 무선충전거치대가 설치되는 장소에 한하여 전동킥보드의 보도 위 주차 허용, 충전거치대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후 전동킥보드 충전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 부가조건: ① 전동킥보드 무선충전거치대에 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는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그 안전성을 인정받은 후 사업을 수행할 것 ② 별도의 계량기능이 없다면 한국전력용 계량기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 ③ 충전거치대는 가로등, 버스정보시스템(BIS) 등과 같이 옥외의 다양한 저위험 전기설비에 적용하는 '옥외의 시설' 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장 제2절(옥외의 시설)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전 검사 가능 ④ 실증사업 기간 중 신청업체는 무선전기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안전성 검증 필요

□ 5G 기반 비가시권 AI 드론 도시안전 서비스(주) 베이리스 컨소시엄)

- 주관·규제부처: 산업통상자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도심 공원 등의 범죄예방, 긴급상황 대처 및 도로교통 모니터링 등
- 관련규제: 「항공안전법」 제129조, 「국가 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규제특례: 안전조치사항 및 비상상황 절차 마련 후 특별비행승인 없이 야간 및 비가시 비행하는 조건 등으로 실증특례 허용
- 부가조건: ① 안전조치사항 마련 후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필요 ② 지역 책임부대의 사전 보안성 검토 후 업체에서 보완조치 완료 ③ 32사단에서 2~4회 군사시설 촬영 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 실시 ④ 해당 지역을 제외하고 촬영 불가 ⑤ 드론의 운용 시간 및 비행경로, 촬영범위, 촬영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모든 이용자(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안내판 부착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 공개하고, 드론 촬영 시 불빛을 통해 촬영 중인 사실을 표시할 것(보호법 제25조 관련)

자료: 규제정보포털, 「규제 샌드박스 현황」

3. 국내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의 시사점

- 국내 규제 샌드박스제도 체계는 금융 핀테크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논의가 집중되어 있는 영국, 미국 등에서와 달리, 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특징을 지님

〈표 III-8〉 각국 규제 샌드박스의 현황 개관

항목	영국	일본	미국	한국
주무부처 (사업담당)	재무부	경제산업성	연방 시행 전 애리조나주 등 시행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금융위
시행 시점	2016년 5월	2018년 6월	2018년 8월	2019년 1월
대상 산업	금융 핀테크	전 산업	애리조나주: 금융 핀테크	전 산업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최초시행 • 코호트¹⁾ 운영 • 선정 5~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제도 • 해외기업 가능 • 그레이존 해소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단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운영

주: 1) 영국은 코호트(cohort) 단위로 모집하는데, 영국 금융감독청은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그룹 단위로 모집하며 '특정한 행동양식 등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뜻의 사회학적 단어인 코호트를 활용해 표현함
 자료: 이현준, 「주요국 혁신의 엔진, 규제 샌드박스(해외 규제 샌드박스 현황 및 시사점)」, 이슈리포트, 2019년-10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 5. 7., 11면.

- 특히 국내 규제 샌드박스제도 체계가 앞서 살펴본 바 대로 ICT, 산업 융합, 금융, 스마트시티 등으로 확대되어 온 과정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가 허용되는 일반적 요건을 ① 영업영역 ② 혁신의 독창성 ③ 소비자보호조치 등으로 제시한 견해²³⁾가 있음
 - 영업영역: 해당 영업영역이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혹은 전체적인 발전의 과정에서 특별한

23) 김대인·최승필·임현,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규제체제 및 거버넌스 개편」, 『신성장 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1)』 제3편, 한국법제연구원, 2017, 76~77면.

고려가 필요한 지에 대한 판단으로서, 신기술의 경우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본질적 속성이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신고 또는 허가로 하여 지속적 규율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재량판단을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업역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익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에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음²⁴⁾

- 혁신의 독창성: 만약에 이미 인허가를 받은 기술적 구조를 가지고 재화 내지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 사업자와의 다른 취급은 평등의 원칙의 위반 그리고 자기구속의 원리 위반을 구성하게 되며, 아울러 제3자가 제기하는 경쟁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결국 핵심적인 사항은 독창성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제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임²⁵⁾
 - 소비자보호조치: 새로운 기술이 재화나 서비스로 제공될 경우 위험적 요소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기술의 독창성으로 인한 규제의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항은 구제가 필요함²⁶⁾
- 이러한 영업영역, 혁신의 독창성, 소비자보호조치 및 분쟁해결절차 등의 관점과 더불어 현행 다섯 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시장에서의 공공계약제도 규제 샌드박스 논의를 함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분야별 특이성과 시대상황을 반영한 규제개선의 의제 정립 필요)** 과거 국내 생산 산업기반이 일천하던 시기에는 국내 (중소)기업 생산시설

24) 앞의 자료, 79면.

25) 앞의 자료, 79면.

26) 앞의 자료, 79면.

구축 및 보호 생태계 마련이 규제개선의 중요 의제였으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현행 시기에는 혁신제품 및 서비스의 진입 여건 확대 및 다양성 제고가 중요한 규제개선 의제로 부상함

○ (규제개선 시 이해관계 조정 및 관련 부처 협조의 중요성) 규제 샌드박스 사업 종료 이후 정식허가를 위한 법 개정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및 충돌 가능성이 존재²⁷⁾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역할이 중요

- 2019년 카카오T 카풀서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법」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택시업계와의 충돌로 인해 잠정적으로 서비스 중단 선언
- 카풀서비스는 택시요금의 70~80% 수준의 가격으로 소비자의 기대가 컸으며 시범서비스 일주일간 드라이버 7만명이 신청(5만명 인증)하였으나, 서비스의 이용자 편익과 사회적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로 남음²⁸⁾

[그림 III-4]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관련 갈등 사례(카풀서비스)

2018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252억원 인수	
7월	국토교통부, 카풀 운전자 당 1일 2회 중재안 제안	
8월 27일	택시업계, 카풀 시간 제한 제안 거부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출범	
11월 14일/20일	택시·카풀 TF 간담회	
12월 7일	카카오T 카풀 베타서비스 시작	
12월 10일	택시기사 최모씨 분신	
12월 13일	카카오T 정식 출시(17일 예정) 연기 발표	
2019년 1월 9일	택시기사 임모씨 분신	
1월 22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화형 기구 출범	
2월 11일	택시기사 김모씨 분신	


자료: 배영임·신혜리, 앞의 자료, 4면.

27) 배영임·신혜리,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이슈&진단』, 제359호, 경기연구원, 2019, 4면.

28) 앞의 자료, 4면.

- 임시허가 1호 그린스케일의 ‘블루투스 기반 전자저울 서비스’의 경우 소관부처가 농림부와 산업부 기술표준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소관업무 불명확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2017년 당시에 정식허가 난항²⁹⁾

〈표 III-9〉 임시허가 제1호 사업 추진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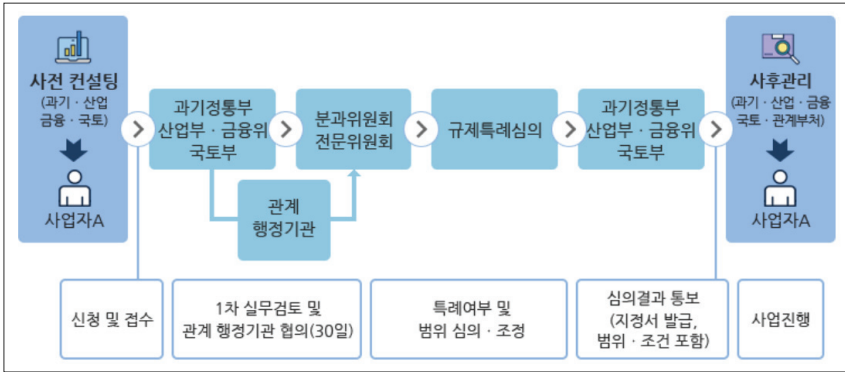
2015년 임시허가 제1호 사업모델	추진경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신청) 2015년 ‘블루투스 기반 전자저울 서비스’ 신속처리와 임시허가 신청 2. (관계부처 검토) 농림부와 산업부의 기술표준원을 소관부처로 보고 검토 3. (임시허가 선정) 농림부 불참, 산업부 기술표준원 단독 임시허가 참여 4. (임시허가 사업 수행) 2015년 10월 12일부터 1년간 임시허가 사업 수행 후 1년 연장 5. (정식허가 표류) 2017년 10월 11일까지 임시허가 만료, 소관부처 소극적 입장표명으로 정식허가 공식 절차 진행 안 됨

자료: 배영임·신혜리, 앞의 자료, 5면.

- (규제개선 사전컨설팅체계의 마련 필요) 국내 규제 샌드박스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분야에 따라 규제특례의 신청 이전에 사전 컨설팅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29) 앞의 자료, 5면.

[그림 Ⅲ-5] 한국 규제 샌드박스 절차



자료: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 예를 들어, 2021년초 경기도는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자체의 컨설팅을 통해, 트럭과 배터리팩을 이용해 전기를 판매하는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스템’과 미용실 1곳에 여러 명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하고 시설을 공유하는 ‘공유 미용실’ 서비스가 실증 특례 승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실무 지원체계의 마련) 특례 사안 발굴 및 접수, 제기 사안의 영향도 분석·평가, 특례승인의 기준 및 요건 마련, 특례 운영의 성과 분석, 특례 운영의 지속 여부 검토를 위한 실무 지원체계 마련 필요

<표 Ⅲ-10> 규제 샌드박스 실무 지원체계 사례

구 분	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	금융혁신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스마트도시법」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신청창구 및 실무 담당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지방중기청 산업기술진흥원	핀테크 지원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자료: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IV.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실행방안 및 법제 개선 방안

1. 해외 기술혁신 계약제도 개관

가. 미국

- 미국은 일반적인 조달계약 이외의 유연한 계약제도를 통해 다양한 기술 혁신업무를 진행하는데, ① 조달계약 - ② 보조금협약 또는 협력협약 - ③ 공동연구개발협약(CRADA) - ④ 기타거래권한(Other Transaction Authority, OTA)의 순서로 연방법령의 규율이 점차로 완화되고, 계약의 탄력성이 높아짐³⁰⁾
- 가장 탄력성이 높고, 연방법령의 규율을 덜 받는 기타거래권한은 국방부와 국립항공우주국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R&D)의 성격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체결하는 모든 연구개발협약에는 「국가계약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절차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³¹⁾

30) 김대인·최승필·임현, 앞의 자료, 142면.

31) 앞의 자료, 142~143면.

나. EU³²⁾

- EU는 혁신의 결과물 또는 혁신의 과정을 조기구매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조달방안으로 공공혁신조달(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PI) 제도를 통해, 유럽 국가들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혁신조달 플랫폼과 EU Procure2Innovate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10여 개 국가의 혁신역량조달센터를 지원하고, 혁신조달 플랫폼을 활용한 상용화이전조달(Pre-Commercial Procurement, PCP)과 공공 분야의 혁신제품 및 서비스 조달 활성화
 - PCP를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률의 2배 증가, 일반 공공조달 대비 국가 간 혁신조달의 대폭 확대

다. 영국³³⁾

- 영국의 기술혁신 관련 계약제도는 ① 중소기업 연구 이니셔티브(Small Business Research Initiative, SBRI)와 ② 사전약정구매(Foward Commitment Procurement, FCP)를 들 수 있음
 - 중소기업 연구 이니셔티브(SBRI) 제도는 Innovate UK의 혁신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공공의 수요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수요기반 산업 도전 프로그램으로서, 정부가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최초 고객으로서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reference를 제공하고, 정부는 직면한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

32) European Comission CORDIS, "Towards Sustainable Zero Carbon Transport through Innovation Procurement," <https://cordis.europa.eu/project/id/316356/reporting>

33) "GovTech Catalyst,"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govtech-catalyst-information#current-govtech-catalyst-projects>

을 조달하고 기업은 R&D 지원과 개발된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구매 기관을 사전에 확보함

-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미국의 SBIR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01년 도입되어, 2008년 재시작(re-launching)된 이후, 2018년 기준 5억파운드 규모의 R&D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66%는 중소기업에 지원함
- 2018년 기준 80개 이상의 정부기관이 SBRI를 통해 문제 해결에 참여, 총 3,060건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짐

○ 사전약정구매(FCP) 제도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장래 조달수요(future outcome-based needs) 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계약으로,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인구변화 등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해결방안(제품 및 서비스)을 제공함

- 결과기반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기업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환경 분야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부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개발되어 2006년 도입
- 현재 범정부 차원의 조달방식이라기보다는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활용되는 하나의 조달방법론으로서 주로 환경 및 보건의료 분야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SBRI와 달리 기술개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데 국립보건원 등에서 중단기 계약을 통해 기간을 부여하고 사전에 요구한 결과를 충족하는 혁신제품 구매에 주로 활용됨

라. 캐나다³⁴⁾

- 캐나다는 조달혁신프로그램(Build in Canada Innovation Program, BCIP)을 통해, 상용 前 혁신솔루션을 캐나다 조달청(PSPC)이 우선구매, 공공 수요와 연계해 시험기회를 제공하는 ‘시범구매+test-bed’ 제도를 운용함
 - 일반 분야와 국방 분야의 기술 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7~9단계의 상용화 前 시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과정 일체 비용을 지원하는데, 일반 분야의 경우 최대 1개 제안(기업)에 테스트 제비용 등 50만CAD(약 4.4억원)를 지원하며, 국방 분야는 최대 100만CAD 까지 지원함
 - 혁신기업·제품의 R&D와 상업화 사이 격차로 인한 시장진출 어려움 등의 해소와 기술혁신 촉진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고, 공공구매력을 이용해 혁신제품의 실용화 사업화 前 시험 및 환류기회를 제공하며, 혁신기업의 구매공급실적 확보, 사전평가, 사업화 지원, 정부 서비스 효율성 개선, 기술개발 노력 증진 효과를 도모함
 - 2010년 시범사업(Call 001-003)으로 시작되어, 2013년부터 정식 사업화 後 현재(Call 008)까지 진행 중

2. 국내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수요 설문 결과

- 본 연구과제 연구진은 '20. 4. 1~'20. 4. 30.까지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수요 설문([부록 1] 국가계약 관련 규제 개선 및 시범사업 대상사항 수요 조사 양식)을 진행함

34) “Sell Your Innovation,” pp. 2~4, <https://bestdefenceconference.com/wp-content/uploads/130-pm-Nov-1-BCIP.pdf>.

- 현재까지 접수된 주요 발주기관·공급업체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수요 내용은 <표 IV-1>과 같음

<표 IV-1>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수요내용

제출기관	제목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수요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제도 도입	<p>□ (현황) 시설 분야는 정형화되고 난이도가 낮은 소액공사에 대해서도 매년 총액입찰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p> <p>○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소요되는 다양한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¹⁾을 체결 → 계약 특정업체에 연중 납품 요구</p> <p>* (지자체) 도장, 콘크리트보수, 도로포장, 방수 공사 등을 예정 수량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 일상적인 유지관리 공사 발주(연간 6천억원 규모²⁾)</p> <p>※ (참고) 우리청은 규격화가 곤란한 영역에 대해 상세설명, 가격, 인증 현황 등 수요기관이 운영정보를 쉽게 파악해 계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방식(MAS) 운영 중</p> <p>□ (개선방안)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의 카탈로그 제안내용과 가격을 평가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카탈로그 방식 계약을 시설 분야에 신규 도입*</p> <p>* 도장·보수, 상수관로 교체, 보도블록 정비 등 소규모공사 대상 우선 시행</p> <p>○ 수요자 중심으로 쉽고, 빠르고, 다양하게 계약할 수 있는 장점</p> <p>○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제도 반영을 위한 국가계약법령 개정 필요</p>				
	계약제도 특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p>□ (현황 및 문제점) 건설업역 개편 등 신규제도 도입 이전 시범사업을 수행해 본 사업의 시행착오 최소화가 필요하나</p> <p>○ 공공기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시범사업 수행이 가능하므로,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충분한 시범사업 확보 미흡</p>				
		<p>□ (추진방안) 맞춤형서비스 사업 또는 계약요청 건을 대상으로 기재부 특례 절차를 간소화해 Fast Track으로 시범사업 수행</p> <p>○ 우리청이 직접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p>				
<p>< 시범사업 시행 프로세스 비교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 vertical-align: top;"> <p>현재 (규정미비) → 직접 실시 불가 공공기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진행가능</p> </td> <td style="width: 70%; text-align: center;">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개선 (규정 마련) → 직접 실시</p>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able>			<p>현재 (규정미비) → 직접 실시 불가 공공기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진행가능</p>		<p>개선 (규정 마련) → 직접 실시</p>	
<p>현재 (규정미비) → 직접 실시 불가 공공기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진행가능</p>						
<p>개선 (규정 마련) → 직접 실시</p>						

〈표 IV-1〉의 계속

제출기관	제목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주요내용
방위 사업청	코로나19 관련 납기연장 수정계약·지체상금 면제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납기연장 수정계약·지체상금 면제원 처리 시 업체 제출서류 및 처리기준 등 설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납기연장 수정계약·지체상금 면제원 접수 건 증가 상황이나 계약팀별, 담당자별 제출서류, 처리기준 등 부재로 인한 업체불만 해소 및 일관성 확보 필요 □ (개선방안) '20년 고성능 영상감시 장비 사업 시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예정 사업
	건설안전, 공사품질, 고객만족을 강화하는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특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LH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건설안전, 공사품질, 고객만족을 강화하기 위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특례사업을 추진 □ (개선방안)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와 아파트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책임형 건설사업 관리 방식 특례 승인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제도화 공감대 형성과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한 정식 제도화 추진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시범사업 유지 필요 □ (개선방안) 지속 사업추진으로 다수업체 참여경험을 통한 원활한 제도정착과 건설산업의 고부가 가치 산업 개편*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 발표('20. 9. 3. 국토부) □ 수도권 공급 강화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주택 1만호, 택지 433만㎡ 규모 시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범용성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 전기·정보통신 공사 등 신 사업유형 추진 □ (특례기간) 향후 법제화 추진일정 고려 2022년도까지 2개년 특례기간 연장 요청
	100억~300억원 미만 턴키계약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낙후지역생활여건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심 시내 도시재생사업 중 난이도가 높은 건설공사지만, 사업금액이 100억~30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일괄입찰계약(턴키계약)이 허용되지 않아 설계사와 시공사를 개별 선정하고 있으나, 공급사 선정에 어려움이 야기(업체 미참여 사례 많음) □ (개선방안) 현재 주택공급 여건상 시급성이 큰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사업 중 사업금액이 100억~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일괄입찰계약(턴키계약) 허용

〈표 IV-1〉의 계속

제출기관	제목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주요내용
	행복주택 신혼희망타 운 사업 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적용 배제 허용	<input type="checkbox"/> (현황)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사업 시 단지 내 분양형이 60% 이상인 경우에도 단지에 골고루 분포한 임대형 주택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시공에 있어 비효율성이 높게 발생하고 거주민 간 차별대우의 결과가 야기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사업 시 단지 내 분양형이 60% 이상인 경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적용 배제 허용
대한전문 건설협회	입찰공고 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입찰 관련 서류(설계서) 게제 의무화	<input type="checkbox"/> (현황) 입찰공고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게재는 임의사항임에 따라, 실제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에 설계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소액 공사의 경우 전자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요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 신청해야 함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설계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깜깜이식 입찰을 진행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통상 발주기관은 설계용역 업체로부터 파일 형태로 납품받고 있는바,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설계도서(설계서, 물량내역서 등)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국가계약법 시행령」) 필요

주: 1) 공공기관이 유지 또는 긴급보수를 위해 체결하는 단가계약으로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잠정계약
 2)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 연간단가 발주규모('18년 5,889억원, '19년 6,448억원)으로 G2B에서 산출
 자료: 저자 정리

3.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원칙 검토

- 국내외 규제 샌드박스 및 공공계약 규제개선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을 전제로, 공공시장의 특이성을 반영한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체계의 마련 필요
- 우선 공공계약 규제개선의 의제를 설정하는 원칙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의 중요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재정효율성 및 공정·경쟁성 유지)** 공공계약 규제개선의 기본원칙을 상정해 본다면, 먼저 경제적 조달계약을 의미하는 재정효율성 달성

이 1차적 원칙이 될 것임.³⁵⁾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공공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물자조달을 행하는 국가조달계약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핵심과제로 진행되어야 하며, 재정효율성 달성의 구체적 기제는 경쟁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절차 마련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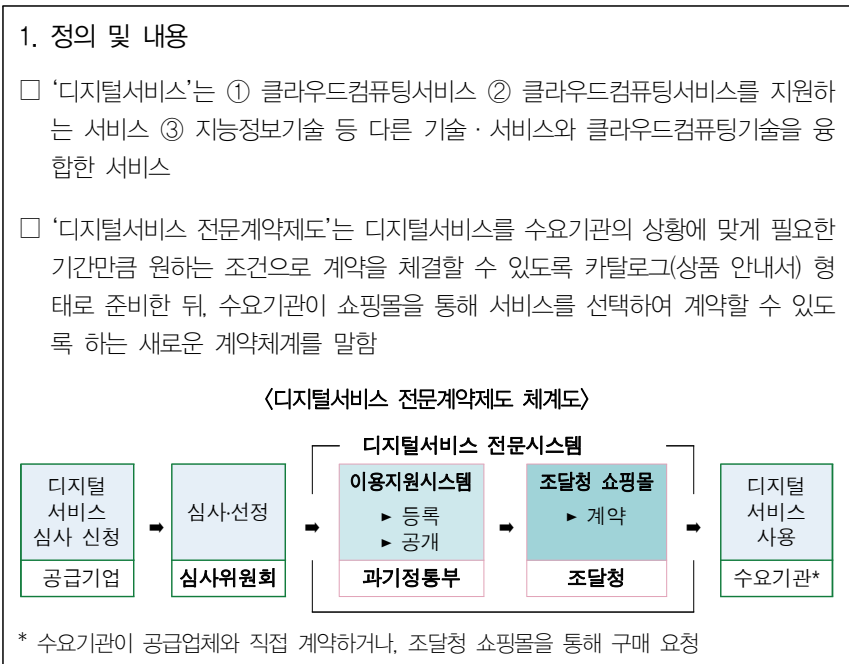
-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조달의 부가) 한편 정부는 2018년 11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간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이 초기시장부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해 혁신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기관의 실제적인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하였음
 - 무엇보다 공공조달 분야 규제 개선의 범위는 제도 전반적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혁신조달을 체계화하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규제 개선 관련 이해관계 조정절차 마련) 일정 특례사항은 특정 공급자군에게는 새로운 기회확대의 계기가 되지만, 또 다른 공급자군에게는 유지해 오던 공급기회가 축소 또는 박탈될 여지가 있으며, 타부처 소관의 법령에 규정된 내용(예: 「의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업역제한, 인·허가 사항 등)과의 상충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특례의 범위와 이해관계의 조정을 이룰 수 있는 의견수렴 및 심의절차를 별도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제도의 직접생산확인기준에 관해 동

35) 정부의 모든 재정운용의 준칙이라 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8조에서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천명하고 있음.

기준이 규제개선 차원에서 대폭 완화되는 경우를 상정할 때, 동 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확충을 해 온 기존 중소기업과 신규 진출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음

-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이하의 공사 “일괄입찰”(소위 “턴키계약”)에 대한 대상 시설 확대를 규제개선 차원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법규 개정이 아니라 일괄입찰 심의대상시설 및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대형공사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고시) 개정이 필요함
- 한편 2020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경우 디지털 혁신 산업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조달청이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이룬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표 IV-2〉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개요



2. 부처별 협력 내용

- 유관 3개 부처는 동 시행령과 동시에 관련 하위규정 개정 진행과 더불어 동 법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함

소관 부처	하위 규정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기획재정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디지털서비스 계약 관련 내용 반영)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정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정

자료: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본격 시행 예정! 정부-공공기관의 민간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기대」, 보도자료, 2020. 9. 22.

- (공공조달계약 방식의 유연화·효율화·다양성³⁶⁾ 제고) 앞서 혁신조달 시제품 제도나 마스크 공급 사례에서 보듯,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산업 및 방역 등 긴급조달상황과 관련해 유연하고 효율적이며 다양한 계약방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 더불어 대법원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인정 한 바 있는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향후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공공계약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성격이 다분한 혁신제품 및 서비스의 계약에 있어서 공공조달계약 방식의 유연화·효율화의 관점에서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27조 상의 ‘공법상 계약’ 인정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이를 통해 사법관계보다 두터운 공법상의 권리구제 기회 향유 제고 가능)

36) 「국가계약법」상 계약의 형태는 확정계약/개산계약, 총액계약/단가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등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반면, 「방위사업법」은 확정계약에도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유인부확정계약, 한도액계약, 장기옵션계약 등이 있고, 개산계약도 중도확정계약, 유인부원가정산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성과기반계약 등 다양한 계약형태가 운용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 법제화 방안

가.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내용

- 현행 ① 공공기관 계약 특례제도(기획재정부) ② 조달시장 참여 범위 확대 및 시장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 계약 관련 규제 개선(공기업 등) ③ 코로나19 등 긴급물자조달 관련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④ 혁신제품 관련 공공계약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기획재정부)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표 IV-3>과 같음

<표 IV-3> 공공계약 규제개선 관련 법적 근거

구 분	중앙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적극행정	「헌법」 제7조(공무원의 책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준
공공기관 계약 특례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시범사업(특례)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감염병 등 긴급조달 규제 특례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 시행령」/하부규정	-
혁신조달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 시행령」/하위규정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준」

자료: 저자 정리

- (공공조달 특례의 내용 및 절차 미비) 현재 혁신조달, 감염병 등 긴급 조달과 관련된 특례사항은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하위규정 개선을 통해 그 내용이 잘 정비되어 있으나, 공공기관 계약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시범사업 운용과 전체적 공공조달 특례절차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기존 규제 샌드박스 입법 사례의 공공조달 특례 벤치마킹 필요)³⁷⁾ 기존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법들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 및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익적 가치의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신기술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점을 조화롭게 해결하고자 규제 3종 세트(① 규제의 신속 확인 ② 실증특례 ③ 임시허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응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규제의 신속 확인은 신기술·신서비스가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 등에 허가 등 기존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30일 이내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곧바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내용임
- 임시허가는 혁신성과 안정성이 확인되어 시장 출시가 가능한 신제품·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모호 또는 불합리로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조기에 시장 출시가 가능토록 허가해 주는 제도로,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한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으로 임시허가 기간 내에 관계부처에 관계 법령을 반드시 정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등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

37) 최효성·김정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9, 76면.

- 장되어 임시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실증특례는 관계 법령의 모호, 불합리 또는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현실과 유사한 시장상황을 규제자유특구 내 조성하여 기간·구역·규모 등 일정 범위로 한정된 조건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실증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사업자가 실증특례 신청 시 민관합동심의회 심의를 통해 2년 이내의 실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장 받을 수도 있으며 실증특례 기간 중이거나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각 규제 샌드박스 법률은 그 특성에 맞춰 다소 규율내용을 달리 하고 있음
 - 「금융혁신법」과 같이 실증특례 규정이 없는 경우와 「스마트도시법」처럼 특구지정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다양성이 존재함

〈표 IV-4〉 현행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비교

구분	「행정규제 기본법」	「금융 혁신법」	「정보통신 융합법」	「산업융합 촉진법」	「지역 특구법」	「스마트 도시법」	비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 제5조의2	×	○ 제3조의2	○ 제3조의2	○ 제4조	×	
신속확인	○ 제19조의3 규제정비	○ 제24조 규제 신속확인	○ 제36조 신속처리	○ 제10조의2 규제 신속확인	○ 제86조 신속확인	×	
실증특례	○ 규제특례	×	○ 제38조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제10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제86조 등 실증을 위한 특례	×	

〈표 IV-3〉의 계속

구분	「행정규제 기본법」	「금융 혁신법」	「정보통신 융합법」	「산업융합 촉진법」	「지역 특구법」	「스마트 도시법」	비고
임시허가		○ 제17조 등 규제적용의 특례	○ 제37조 임시허가	○ 제10조의5 임시허가	○ 제90조 등 임시허가	×	
특구지정	×	×	×	×	○ 제72조 등 규제자유 특구(규제 프리존)	○ 제47조 스마트규제 혁신지구의 지정 등	
위원회 설치	×	○ 제13조 혁신금융 심사위원회	○ 제10조의2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 제8조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 제77조 규제자유 특구위원회 ○ 제79조 규제자유 특구규제 특례 등 심의위원회	○ 제23조 국가스마트 도시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기능 확대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 제2항)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융합위원회 설치 (「금융혁신법」 제3조 제1항)
벌칙조항	×	○ 제33조 등	○ 제44조	○ 제38조	○ 제142조	○ 제54조 등	

자료: 저자 정리

- 공공계약 분야 또한 규제개선 수요 상황에 따라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에 대응되는 법적 근거 마련이 가능함

〈표 IV-5〉 공공계약건의 유형별 규제대응 입법 방향

구분	대응 방향	절차	입법적 대응
해석으로 법령 위반 아님을 규명 가능한 경우	적극행정·실행 필요 영역	집행	신속확인
법령상 허용되는지 모호한 경우	심의절차·기준 마련 필요 영역	기준마련·위원회 등 심의→집행	임시허가
법령 위반이 명백하지만 허용 필요성이 큰 경우	단계적 접근 필요 영역	1차 임시 허용→ 시범사업/평가→ 법령 개선→ 허용(부분/전체)	실증특례

자료: 저자 정리

나. 공공계약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안)

1) 유사 규제 샌드박스 법제 적용 「국가계약법」 개정안(제1안)

가) 공공계약 규제 신속확인 제도

- 본래 유사 규제 샌드박스 법제에서의 규제 ‘신속 확인’은 신기술·신서비스가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 등에 허가 등 기존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30일 이내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곧바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내용³⁸⁾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공공계약제도의 특성상 부처 회신 부재 시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은 성립되기 어려움
- 다만 신기술·신서비스가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시장 진입에 있어 규제 문의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은 필요할 것이므로, 관련 규정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IV-6〉 관련 「국가계약법」 개정 예시

제100조(혁신기술 적용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시장 관련 규제내용 신속확인) ①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공공시장에 참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제품 및 서비스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혁신 기술 적용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시장 진입 규제 내용 확인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혁신 기술 적용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시장 참여 관련 규제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38) 최효성·김정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9, 76면.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0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공공시장 참여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공공시장 참여를 위한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공공계약 규제 임시허가 제도

- 임시허가는 혁신성과 안정성이 확인되어 시장 출시가 가능한 신제품·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모호 또는 불합리로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조기에 시장 출시가 가능토록 허가해 주는 제도로,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한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으로 임시허가 기간 내에 관계부처에 관계 법령을 반드시 정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³⁹⁾임

〈표 IV-7〉 관련 「국가계약법」 개정 예시

제00조(임시허가) ①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공공시장에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의 공공시장 참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관계기관의 장은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39) 최효성·김정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9, 76면.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 ⑧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기술·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 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⑪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⑫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00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00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제00조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 제00조제1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공공계약 규제 실증특례 제도

□ 유사한 규제 샌드박스 법제 사례에서의 규제 ‘실증특례’는 관계 법령의 모호, 불합리 또는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현실과 유사한 시장상황을 규제자유특구 내에 조성하여 기간·구역·규모 등 일정 범위로 한정된 조건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실증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⁴⁰⁾이므로, 실제 개발 중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시장에 안착시키는 테스트베드 공공계약유형에 동 ‘실증특례’ 제도를 응용할 수 있을 것임

〈표 IV-8〉 관련 「국가계약법」 개정 예시

제0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공시장에 참여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공공계약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된 신규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0) 최호성·김정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9, 76면.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안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안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00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아 시행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 ② 제00조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기술·서비스의 내용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건강·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③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계약 관련 신기술·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

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00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장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0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00조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 받은 경우
2. 제00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00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에 따른 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규제혁신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유연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제2안)

□ 제1안의 「국가계약법」 개정의 경우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 입법 사례에 충실한 내용이지만, 내용이 광범위하고 다소 복잡한 단점이 존재

□ 따라서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공공계약 샌드박스의 핵심 논지인 계약방식의 유연화·다양화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만으로 별도의 조문을 구성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어, 새로운 입찰 및 계약제도의 도입, 특례적 계약조건의 운용, 시범사업의 운용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조문 신설 개정안을 제시함

- 더불어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조달사업법」 제 27조의 혁신제품구매에 따른 면책 조항의 내용과 같이, 제도 개선 및 구매 담당자의 면책 규정 마련 필요

「조달사업법」 제27조 혁신제품 구매 관련 면책조항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표 IV-9〉 계약방식의 유연화와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예시(제2안)

제00조(기술 혁신 관련 신규 입찰·계약 방식 도입과 시범사업의 실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혁신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새로운 입찰 및 계약제도의 도입, 관련 계약조건 등의 운용 등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입찰 및 계약방식, 특례 사항의 내용을 마련하거나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및 계약방식의 마련, 특례 사항의 인정 또는 관련 시범사업 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찰 및 계약방식의 마련, 특례 사항의 인정 또는 관련 시범사업 운용 절차 등을 통해 구매한 기관의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실무 지원체계의 마련) 특례 사안 발굴 및 접수, 제기 사안의 영향도 분석·평가, 특례승인의 기준 및 요건 마

런, 특례 운영의 성과 분석, 특례 운영의 지속 여부 검토를 위한 실무 지원체계 마련 필요 ⇒ 가칭 ‘공공계약 규제혁신 지원센터’ 설치 필요(동 내용은 제3안에서도 적용 가능)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및 관련 분과위의 역할 확대) 제2안과 관련, 최근 개정 「조달사업법」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1항 제2호에서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동 위원회를 혁신 조달의 컨트롤타워로서 명시하고, 동항 제4호는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계약 규제개선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동 내용은 제3안에서도 적용 가능)

「조달사업법」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①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조달, 경제·과학,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앞서 언급한 공공계약 규제개선 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는 향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민관합동 분과위원회인 ‘공공조달 제도 개선 위원회’에서 유관 부처 담당자 및 전문가의 참여하에 공공계약 규제개선 사항의 일괄상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동 내용은 제3안에서도 적용 가능)

3) 중앙부처의 국가계약의 기준·절차 유연화에 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제3안)

- 제1·2안의 「국가계약법」 개정의 경우, 국회 입법 논의절차, 타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계약 낙찰자선정 기준·계약방식의 다양화 추진)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제3호의 내용은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쟁입찰의 낙찰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다소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음
 - 본래 정부계약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의 계약⁴¹⁾(대판 1983. 12. 27. 81누366)으로서, 낙찰자결정 및 계약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제3호의 위임규정에 따라,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이하에서 다양한 낙찰자결정 및 계약 방식이 규정되어 있음

41) 정부조달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임

국가계약법 시행령(현행)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45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중앙부처도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 혁신의 플랫폼 역할 기대) 신규계약제도 도입 이전에 시범사업을 수행해 본 사업의 시행착오 최소화가 필요하나, 공공기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시범사업 수행이 가능하므로,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충분한 시범사업 확보 미흡
 - 따라서 맞춤형서비스 사업 또는 계약요청 건을 대상으로 기재부 특례 절차를 간소화해 Fast Track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달청 등 중앙부처가 기재부와 협의하여 직접 계약제도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표 IV-10〉 공공계약의 기준과 절차의 유연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예시(제3안)

개정안

〈신설〉

제43조의4(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의 실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관서의 업무 특성, 계약 목적물의 혁신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영이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적용한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범특례사업 실시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범특례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시범특례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약제도의 주요 목적 및 내용
2.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약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
3. 그 밖에 당해 시범특례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시범특례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승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2년 이내의 기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시범특례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 성과평가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7조제2항에 따른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계약법령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시범특례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계약과 관련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계약 시범특례 지원 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약제도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및 연구
2. 각 중앙관서의 시범특례사업 계획 수립 컨설팅
3. 시범특례사업 성과평가
4. 그 밖에 시범특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그 밖에 시범특례사업의 운영과 국가계약 시범특례 지원 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4) 공공계약 기준·절차 유연화를 위한 조달청 역할 확대 관련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제4안)

□ 현행 국가계약법령 체계에서 대부분의 경쟁·수의 등 계약방식과 낙찰자 결정방식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는데, 계약방식의 유연화·다양화를 달성할 수 있는 특례적 역할을 조달청에 허용하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음

- (혁신산업 관련 계약내용 및 절차에 대한 조달청의 신속한 기준 마련)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계약 방식의 유연화와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계약의 기준·절차 유연화 도모
-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 혁신 관련 조달청의 역할 확대) 조달청 계약요청 건을 대상으로 기재부 특례 절차를 간소화해 Fast Track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달청이 기재부와의 협의하에 직접 계약제도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계약 제도에도 확산 도모

〈표 IV-11〉 공공계약의 기준과 절차의 유연화를 위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 예시(제4안)

현 행	개정안
제14조(계약방법의 특례)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방법을 말한다. 1.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2. 제35조에 따른 비촉물자에 대한 계약 〈신 설〉	3. 혁신 산업 및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준·절차를 마련한 계약

자료: 조달청 시설총괄과(2021. 3.)

5)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개선의 단계적 접근 방안

□ 앞서 제시한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표 IV-12>와 같음

<표 IV-12> 공공계약 규제 샌드박스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안 차용 「국가계약법」 개정 (제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개선의 체계적 절차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이 복잡하고 입법절차시 난항 예상 지방계약 분야 적용 난이
공공계약제도 유연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제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방식의 유연화·다양화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만으로 단순화하여 간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차법 위주의 현재 국가계약법 체계와의 정합성에 문제 야기 지방계약 분야 적용 난이
중앙부처의 국가계약의 기준·절차 유연화에 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3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부처의 계약방식 다양화 요구에 부응 법을 개정안에 비해 신속한 추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부처의 과도한 요구는 국가계약법령 체계에 부담 야기 별도 심의절차 마련 필요 지방계약 분야 적용 난이
공공계약 기준·절차 유연화를 위한 조달청 역할 확대 관련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4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의 공공계약 기준·절차 유연화 실무적 창구 역할 확대를 통해, 규제혁신의 신속한 추진 가능 지방계약 분야 적용 상대적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과 기획재정부와의 역할분담 명확화 필요(별도 심의절차 마련)

자료: 저자 정리

□ 제1안(규제 샌드박스제도의 「국가계약법」 적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허가 등 타 법령에 따른 규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계약절차의 속성으로 인해 규제 관련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의 대상과 범위가 다른 관계 기관의 규제개선 테마나 활동과 중첩될 소지가 높다는 견해가 있음

□ 더불어 신기술이나 혁신이 반영된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경우, 「조달사업법」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와 상당 부분 중첩될 가능성이 있음

「조달사업법」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실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공공계약 규제개선 사례에서 보듯, 공공계약 규제개선은 혁신적 입찰참가자격/입찰·낙찰·계약관리 제도를 대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제2안(공공계약제도 유연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의 경우, 유연한 낙찰자결정 방식과 계약방식의 구체적 허용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서 법률의 형식은 경직적이며,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제3호의 내용이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쟁입찰의 낙찰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다소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계상 부적절함
-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이하에서 다양한 낙찰자결정 및 계약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바, 제3안(중앙부처의 국가계약의 기준·절차 유연화에 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동법 시행령에 다양한 낙찰자결정·계약방식의 한시적 허용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표 IV-13〉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공계약 규제개선 사례(조달청)

	대표사례	계약 원칙 (기준)	적극행정(조치)		규정 개정	면책	비고
			적극 해석	규정 초월			
등록	지문등록 면제	×		○	○	○	전염병 확산 우려 고려 예외 허용
	민간(마스크유통업체)의 수요기관 등록	×	○			○	비상공급 목적 예외 허용
	제조물품 현장조사	×		○	○	○	현장조사 유예 적용
계약 방법 결정	마스크 수의계약 체결	×	○			○	'적합한 제조자 없는 경우'로 적극 적용
	마스크 공급업체와 계약	×	○			○	생산, 공급업체 모두 인정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			○	천재·지변 등 준하는 경우로 적극 적용
	5천만원 이상 소액수의계약	×		○	○	○	1억 이상 소액수의 한시적 적용
입찰 단계	입찰보증금 면제/감액	×	○		○	○	※ 적극해석(면제), 법령개정(감액)
	기준가격 초과 인정	×	○			○	
심사·평가	협상계약 온라인평가 확대	×		○	○	○	10억 이상인 경우도 예외적 허용
	건축 설계공모 온라인심사 확대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예외적 허용
계약 단계	계약보증금 면제/감액	×	○		○	○	※ 적극해석(면제), 법령개정(감액)
	조달수수료 면제	×	○			○	수요기관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납품 대금 지급 간소화	조달요청 및 납품요구 단계 생략(납품 先처리)	×	○			○	생산 즉시 납품 가능
	물품납품서류 제출 생략	×		○	○	○	납품 즉시 대금청구 및 지급

자료: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2020. 12.)

참고문헌

- 구자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20.
- 구자현·안상훈·이수일 등, 『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16.
- 권현영,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KISO저널』, 제35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9.
- 김대인·최승필·임현,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Ⅰ)』 제3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규제체제 및 거버넌스 개편, 한국법제연구원, 2017.
- 김신·이혁우, 『규제혁신을 위한 기존 규제의 정비 방안』, 한국발명진흥회, 2016.
- 김윤경, 「한·일의 혁신관련 규제개혁 비교: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한일경상논집』, 제88권, 한일경상학회, 2020.
- 배영임·신혜리, 「규제 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이슈&진단』, 제359호, 경기연구원, 2019.
- 성희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네거티브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금융규제체계의 재구축 방안 연구」, 『법과정책』, 제24호, 2018.
- 이재훈·정희영,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와 정책적 제언」, 『인권과 정의』, 제489호, 대한변호사협회, 2020.
- 이현준, 「주요국 혁신의 엔진, 규제 샌드박스(해외 규제 샌드박스 현황 및 시사점)」, 이슈리포트 2019년-10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
- 이용환,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중간 평가」, 『규제연구 연구논단』, 2000.
- 이원우, 「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법의 현황과 과제」,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통권 제24호), 2019.
- 육상현, 「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전자공학회지』, 제46권 제6호, 대한전자

공학회, 2019.

최호성·김정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9.

대한민국 정부, 『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 2020.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안)」, 2017. 10.

_____,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보도참고자료, 2020. 1. 23.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신산업 발전 촉진 규제혁신 공공기관으로 확산」, 보도자료, 2020. 5. 6.

〈웹사이트〉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https://www.better.go.kr>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reareg/>

애리조나 핀테크 샌드박스 홈페이지, <https://www.azag.gov/fintech/participants/>

영국 금융감독청(FCA) 홈페이지, <https://www.fca.org.uk/>

일본 성장전략포털사이트 규제 샌드박스제도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regulatorysandbox.html>

GOV.UK, “GovTech Catalyst,”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govtech-catalyst-information#current-govtech-catalyst-projects>

European Commission CORDIS, “Towards Sustainable Zero Carbon Transport through Innovation Procurement,” <https://cordis.europa.eu/project/id/316356/reporting>.

Forbes, “It’s Time For A Federal Fintech Sandbox,” <https://www.forbes.com/sites/forbesfinancecouncil/2019/12/06/its-time-for-a-federal-fintech-sandbox/?sh=11955a686e1e>

Native American Financial Services, “More States Establishing Regulatory

Sandboxes for Fintechs,” <https://nativefinance.org/news/more-states-establishing-regulatory-sandboxes-for-fintechs/>

“Sell Your Innovation,” pp. 2~4, <https://bestdefenceconference.com/wp-content/uploads/130-pm-Nov-1-BCIP.pdf>.

부록

[부록 1] 국가계약 관련 규제개선 및 시범사업 대상사항 수요조사 양식

□ 개요

- 다양한 혁신산업지원을 위해, 국가계약제도 관련 규제개선 사항과, 임시허가를 부여받거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시범사업 진행이 필요한 공공(시장)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수요 조사
(현재 한국조달연구원 진행 중인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공공계약 샌드박스 제도 운영방안 연구” 관련 사항)

(사례 예시)

1. (입찰참가자격)

-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업역 철폐 → 실적 등 요건 완화로 입찰참여 확대

2. (계약의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의 평가 요건/유형 다양화 (에너지효율, 사회적책임 등)
- 시설공사 관련하여, “경쟁적 대화방식”,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도입

3. (낙찰자결정 방식)

-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 (현재 윤찰제 비판) →
(개선예시) (1차) 현행 제도하 3순위까지 공급자 선별, (2차) 3순위까지 별도 계약이행능력심사로 최종 공급자 선정

4. (계약제도)

- 기재부장관 협의하에 중앙부처의 시범사업 진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계약법령 개정

5. (기타)

-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개선 및 분쟁조정 실무 매뉴얼 마련
- 시공책임형CM 시범사업 확대

* 소속 기관명 : _____

내용	의견 개요(제안제목, 개략적 제안 취지 포함)
규제 개선 대상	
시범 사업 대상	

* 상세 의견제시를 위해 별지 사용 가능

[부록 2] 정보통신분야 규제 샌드박스 입법(「정보통신융합법」) 사례

-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16.>
-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2018. 10. 1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⑤ 해당 신청인은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10. 16.>
-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제2(일괄처리)**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허가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관계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등을 위한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등을 위한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심사개시사실·심사기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방법·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37조(임시허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관계기관의 장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8. 10. 1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10. 16.>

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⑦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⑧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기술·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개정 2018. 10. 16.>

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⑪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⑫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1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신설 2018. 10. 16.>

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0. 16.>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관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관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받아 시행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기술·서비스의 내용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건강·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7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장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38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 받은 경우
2.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에 따른 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10. 16.]

■ 저자약력

김창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공학박사
현, 한국조달연구원 공사계약연구팀 부연구위원

김대식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현,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 선임연구위원

백용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경영학 박사수료
현,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 선임연구위원

박영숙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법학 박사수료
현,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 연구위원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공공계약 샌드박스제도 운영 방안 연구

발행	행	2021년 10월
저자	자	김창원 · 김대식 · 백용선 · 박영숙
발행인	인	김재진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jpf.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쇄	세일포커스(주)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공공계약
샌드박스제도
운영 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